#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 규 집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목 차

1.	의과대학 내규	·· 1
2.	의과대학 위원회 규정	
	1) 공간관리위원회 규정	19
	2)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	
	3)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4) 인문사회의학위원회 규정	27
	5) 기초의학위원회 규정	29
	6) 의예과위원회 규정	31
	7) 임상실습위원회 규정	33
	8) 장기계통위원회 규정	35
	9) CPX위원회 규정······	38
	10) 임상수기위원회 규정	40
	11) PBL위원회 규정	42
	12) 기초종합평가위원회 규정	44
	13) 임상종합평가위원회 규정	46
	14) 포트폴리오위원회 규정	48
	15) 한양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규정	50
	16)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52
	17) 발전위원회 규정	54
	18) 발전기금위원회 규정	56
	19) 대학원위원회 규정	59
	20) 대학원 장학위원회 규정	61
	21) 예산운영위원회 규정	63
	22) 의학정보위원회 규정	65
	23) 의학교육평가인증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67
	24) 인사심의위원회 규정	69
	25) 인한위워히 규정	71

	26) 장학위원회 규정	73
	27) 졸업후 연수교육 위원회 규정	75
	28) 진급사정 및 소명위원회 규정	77
	29) 질관리개선위원회 규정	80
	30) 편집위원회 규정	82
	31)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84
	32) 의학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 규정	87
	33) 산업연계교육자문위원회(IAB) 내규	88
3.	기타규정	
	1) 의학교육진흥원 내규	93
	2) 의과대학 임상실습 내규	96
	3) 의과대학 학생인턴제 임상실습 내규	99
	4) 단기 학회 참가지원 규정 1	01
	5) 의과대학 지도교수 배정 세칙 1	
	6) 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내규1	
	7) 의과대학 주임교수 임명과 책무 내규1	
	8) 의과대학 학생상담 운영 내규1	
	9) 국제화프로그램 장학금 지급 내규1	
	10) 한양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규정1	13
	11) 학생 연구시설 사용지침1	16
	12) 장기계통 통합과정 책임교수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1	19
	13) 의과대학 RC행정팀 업무운영규정1	
	14) 의과대학 연구조교 장학생 선발 시행 지침1	23
	의과대학 연구조교 장학생 선발에 관한 학과별 시행 세칙1	
	15)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업무규정1	
	16)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업무규정1	
	17) 감염 및 환경위험 노출에 대한 지침1	
	18)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1	34
	19) 의과대학 학생평가지침(의예과)1	
	20) 의과대학 학생평가지침(1시기, 2시기) 1	36
	21) 의과대학 학생평가지침(3시기 임상실습) 1	38

	22) Wall of fame 기부자 명패의 향후 관리 원칙14	11
	23) Wall of fame 단체기부자 명패의 향후 관리 시행 세칙14	12
	24) 의과대학 규정검토위원회 운영 규정14	45
4.	서 식	
	1) 소명신청서 14	17

## 의과대학 내규

## 의과대학 내규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① 의과대학 내규(이하 내규)는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과의 학사, 연구 및 행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한양대학교 규정(이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 한다.
- ②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 이 국제적, 국가적 및 지역 공동체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함 있어 요구되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함이 그 제정 목적이다.

#### 제2조 (의과대학 행정팀)

의과대학 행정팀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의과대학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 (제 위원회)

- ① 의과대학에는 특수 목적에 따른 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 장 의과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

#### 제4조 (자율성과 독립성)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따라 재단, 대학본부 등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학사 행정을 운영한다. 교원의 인사, 재정, 학생교육 및 장학금 지급 등대부분의 학사 및 대학 운영 등의 업무는 의과대학 학장이 전결권을 행사한다. 학장의 자율성 및 독립성은 정관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보장되어 의과대학은 대학본부로부터 분권화된 조직으로 운영된다. 또한, 의과대학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사행정 및 재정집행을 위해 학장을 중심으로 교무부학장, 의학교육진흥원장, 연구부학장, 학생부학장, 의학과장, 의예과장, 교육과장(서울), 교육과장(구리), 의학RC 행정팀장 및 제 위원회를 둔다.

#### 제4조의2 (의과대학 사명)

- ① 의과대학의 존재이유와 추구하는 이념을 명시한 사명을 제정하고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한다.
- ② 대학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사명 공유 정도 파악을 위하여, 매년 상반기

중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 제4조의 3(의과대학 규정)

- ① 의과대학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 및 내규를 둘 수 있다.
- ② 규정과 내규의 제·개정 사항은 의과대학 보직자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한다.
- ③ 다만 ②항과 관련하여 제·개정 사항이 본 내규 제53조의 주임교수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직자회의 심의 후 주임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한다.

## 제 3 장 의과대학 교원

#### 제 1 절 총 칙

#### 제5조 (교원의 구분)

- ① 교원은 정관 제4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과 그이외의 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비정년트랙 교원은 전담하는 직무와 임용기간에 따라 교양외국어 및 언어실습 전담교원, 교육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단기교원으로 구분한다.
- ④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 ⑤ 의과대학의 교원은 전임교원, 외래교원, 명예교수로 구분한다.
- ⑥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 ⑦ 외래교원은 타 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나, 의과대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위촉되는 교원으로, 외래교수, 외래부교수, 외래조교수 및 외래강사로 구분한다.

#### 제5조의2 (교원의 의무)

- ① 교원은 본교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교원은 학생교육과 연구 외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의학교육 및 교수개발연수 프로그램에 연간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 (기타)

교원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한양대학교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적용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 혹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 2 절 학장 및 보직자 임무

#### 제7조 (학장의 자격요건, 선출 및 임무)

학장 선임대상자는 교육, 교수개발, 연구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학장선출은 의대 전임교원들이 이메일 추천으로 최대 득표학장선출 후보 2인을 대학 본부로 올려 교육 지도자로서의 자질, 교육/연구성과 제고 방안, 대학의 경영능력, 대학발전에 대한 비전을 평가하여 이중 1명을 임명한다. 학장은 예산의 세부시행 계획조정, 통상적인 업무진행, 시상의 세부계획과 시행, 직원의 교육 훈련 파견, 배정 및 집행범위가 정해진 예산의 지출, 입시전형계획, 휴학및 자퇴 처리, 교과과정의 편성 보고 운영 관리, 교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결권자가되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 제8조 (보직자 선출 및 임무)

교무, 학생, 연구부학장 및 의학교육진흥원장은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교무부학장은 학사행정, 교수업적평가, 대외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학생부학장은 학생회 주관사업, 학생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연구부학장은 연구정책개발, 학생과 교수 연구 활동 지원업무를 관장한다. 의학교육진흥원장은 교육과정개발, 교수개발, 학생지원,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의학과장은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 학사, 재정, 입학 및 대학원교육을 관장한다. 의예과장은 학장이 임명하며 의예과수업 및 학사행정을 관장한다. 교육과장은 서울병원, 구리병원 각각 1명을 학장이 임명하며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과 임상실습을 관장한다. 의학정보실장은 학장이 임명하며 교육 정보화 업무를 관장한다. 의학연구실장은 학장이 임명하며 연구정책개발 지원 및 의학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임상술기센터장은 학장이 임명하며 임상술기교육 및 MESH센터 운영을 관장한다. 의학교육진흥원 부원장은 학장이 임명하며, 의학교육진흥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제8조의2 (평가)

학장 및 보직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1년에 1회 수행한다.

#### 제8조의3 (직무전문성 확보)

보직자는 직무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중 직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의과대학은 보직자가 직무전문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한다.

#### 제8조의4 (구리병원 교육 점검)

학장 및 보직자는 학기 당 1회 구리병원을 방문해 구리병원의 교육 현황 및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 제 3 절 의과대학 인사위원회

## 제9조 (설치)

의과대학 내에는 의과대학 교원(이하 교원) 인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인사위원회를 둔다.

#### 제10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학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의학과장으로 하며 선출직 위원을 둔다.
- ③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기능)

인사위원회는 의과대학 교원 인사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교원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 2. 교원의 정원 및 신규 임용의 계획 수립
- 3. 교원의 승진, 승급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 4. 교원의 인사 배치 및 교류 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 (운영)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의학과장은 간사가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④ 해당 교실 주임교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 ⑤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해당 교원이 불복 시 해당 교원에게 소청의 기회를 부여한다.

#### 제13조 (기밀 유지)

- ① 인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 된 사항 중 위원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외의 모든 회의 안건과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 제14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절 의과대학 교원 인사 기준

#### 제15조 (인사 기준)

- ① 교원의 인사(신규 임용, 승진, 승급 및 재임용 등)는 한양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의하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은 내규에 따른다.
- ② 외래교수의 위촉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총장은 필요에 따라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 5 절 임상의학전임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 제16조 (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임상의학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의 장기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7조 (정의)

"장기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라 함은 본교의 진료발전을 목적으로 교원을 국내외의 타 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연구 또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그 연수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 (신청)

교원이 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수예정일 60일전에 의료원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수승인신청서 1부
- 2. 연수계획서 1부
- 3. 보강.대강.대진계획서 1부
- 4. 초청장 또는 연수관련증빙서류(사본) 1부
- 5. 직무대행서(보직자에 한함) 1부
- 6. 각서 1부

#### 제19조 (허가)

- ① 교원의 연수는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학기 중 휴직, 연구년 및 연수 교원의 수가 소속 진료과 전임교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연수는 본교에서 최소한 3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계속 근무한 자에 한하여 허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연구년을 수행한 교원에 대하여는 복귀 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연수는 재직기간 중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이하 연수를 수행한 자가 연수복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하 연수를 1회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⑥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0조 (처우)

- ① 교원이 연수기간 중이라도「교원 및 일반직원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 ② 연수기간 중 강의료, 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 ③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성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의료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④ 교원이 연수기간 중에 연수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 (의무)

- ① 연수중인 교원은 매 3개월마다 연수내용을 연수지도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수교원은 종료 후 지체없이 본교에 복귀하여야 하며,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수교원은 복귀할 때 진료과에 연수결과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연수내용을 복귀 1개월 이내에 진료과 교원 및 전공의 합동회의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 ④ 연수교원은 복귀할 때 연수기관의 지도책임자로 하여금 병원장에게 본인의 연수실적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연수교원은 복귀 후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 제22조 (위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① 교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 제21조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였거나 본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임된 교원은 그 연수기간 중 받은 급여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 4장 학 사

### 제 1 절 학 부

#### 제23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87조에 의거하여 의과대학에 관한 학칙 시행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만을 따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4조 (교과이수 기준)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의예과 및 의학과 1, 2학년의 경우 해당 학기(이하 해당 학기), 의학과 3, 4학년의 경우 해당 학년(이하 해당 학년)에 수강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 2.00이상인 자로서 1개의 전공과목이 과락인 경우 진급심사 전에 해당 교과목에 대한 특별시험을 학기 또는 학년 말에 시행할 수 있다.
- ④ 특별시험의 성적은 69점을 최고 점수로 한다.
- ⑤ 특별시험은 1, 2학기 통산 1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특별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평점평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시 교과목별 평점은 별표 1의 성적환산표에 따른다. [(교과목별평점 x 학점) 의 총합] ÷ 수강신청 총학점

#### 제26조 (의학과 진급)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시 의예과의 총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 제27조 (유급)

- ① 유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기유급: 해당 학기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학기를 다시 이수해야하는 제도 (의예과 1학년과 2학년,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 2. 학년 유급: 해당 학년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하는 제도(의학과 3학년과 4학년)
- ②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학업성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급한다.
- 1.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평점평균이 2.00미만 인자

- 2. 수강한 교과목 중 과락과목이 있는 자(다만, 의예과는 전공 교과목만 해당)
- 3. 졸업요건(의예과는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
- ③ 유급된 자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기취득 학점은 무효로 하고 전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제28조** 삭제

#### 제29조 (제적)

- ① 학칙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3회 강제유급시에는 제적한다.
- ② 동일학년 2회 강제유급시에는 제적한다.
- ③ 삭제
- ④ 재입학한 당해 학년도 강제유급시 재제적한다.

#### 제30조 (재수강)

기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은 학수번호가 같거나 대치과목 또는 동일과 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상위급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 취 득한 성적을 취소한다.

#### 제31조 (휴학)

휴학은 학칙시행세칙 I 제12조,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가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가휴학원서(본교 소정양식)와 4주 이상의 진단서(상급 종합병원 발행)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 (졸업종합시험)

- ① 졸업논문에 갈음하여 의학과 4학년 학생에 대하여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한다.
- ② 졸업종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자격을 인정한다.

#### 제33조 (재입학)

- ① 재입학은 의과대학 학사제적자로서, 해당학과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학칙 제51조 제2항의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
- ②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 제34조 (특별휴학)

강제유급(학기유급)된 학생은 한 학기 동안 휴학을 실시한다.

#### 제35조 (복학시기)

휴학생의 복학은 학기 또는 학년 초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유급) 규정에

따라 유급된 경우 해당학기 초에 복학하여야 하며 월반복학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대학원 의학과

#### 제36조 (전공분야)

의학과 전공은 석·박사 공히 기초 12전공과 임상 24전공으로 분류한다.

- 1. 기초(석·박사): 해부·세포생물학전공, 생리학전공, 생화학전공, 병리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약리학전공, 예방의학전공, 기생충학전공, 의학유전학전공, 의공학전공, 의학교육학전공, 의료인문학전공 (12전공)
- 2. 임상(석·박사): 내과학전공, 외과학전공, 정형외과학전공, 신경외과학전공, 흉부외과학전공, 성형외과학전공, 소아과학전공, 산부인과학전공, 이비인후과학전공, 안과학전공, 비뇨의학전공, 피부과학전공, 정신건강의학전공, 진단검사의학전공, 영상의학전공, 마취통증의학전공, 재활의학전공, 치과학전공, 신경과학전공, 치료방사선과학전공, 가정의학전공, 직업환경의학전공, 핵의학전공, 응급의학전공 (24전공)

#### 제37조 (입학)

본 과의 입학은 대학원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내규를 따른다. 그 외 학과별 입학전형 세부사항은 별도로 관리하는 학과 입학전형 내규에 따른다.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전공심층면접, 일반전형은 서류전형과 필기고사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며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단 타학과 졸업생이 지원할경우에는 해당 전공교실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단 타학과 졸업생 또는 타전공 응시자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교실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의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 기초의학교실의 전일제학생으로 선발한다.

#### 제38조 (교과목 개설)

- ① 각 전공교실별로 교과목의 개설학기를 4학기 단위로 확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4학기를 기준으로 개설 학기를 미리 정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강 신청시 별도로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으며, 사전에 요람을 통하여 학생들은 개 설과목을 미리 파악하다.
- ② 각 전공교실별로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4학기 단위로 확정하여 운용하며, 아래와 같이 매학기당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전공선택 과목을 매학기당 2과목 이상 개설하

여 전공선택 과목, 타교실 전공선택 과목 및 전공필수과목 등을 학생 스스로 자유 롭게 선택하게 하여 설강 여부가 결정 된다.

2	·정	내용
	전공선택	매학기당 2과목 이상
석사	타교실전공선택	학위과정에 따라 학생 스 스로 선택
버니기저	전공선택	매학기당 2과목 이상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타교실전공선택	학위과정에 따라 학생 스 스로 선택
석, 박사 공통	전공필수	매학기 2과목 중 1개과목 선택

- ③ 석·박사학위과정을 전면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석·박사 공통으로 개설할 '전공선택' 과목은 2배수 상한의 경우 모두 16과목이 된다.
- ④ 석·박사학위과정을 부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석·박사 공통으로 개설할 '전공선택' 과목 수를 총 개설 과목 수에서 뺀 만큼만 개설할 수 있다.
- ⑤ 단, 전공교실별 교수수가 10명씩 초과시 매학기당 석·박사 합쳐서 1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 ⑥ 전공교실별로 3과목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중복 개설할 수 있다.
- ⑦ 기말고사 성적기록표 제출 시 출석부 및 성적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 제39조 (이수학점)

학위 과정	졸업 학점	학점구분	학점	이수구분
MIL	26	교과학점	21	전공(선택,필수)
석사		연구학점	5	연구(선택,필수)
박사	37	교과학점	30	전공(선택,필수)
		이수학점	3	무관(전공선택/필수,타전 공)
		연구학점	4	연구필수(1,2)
ᅺᆔᇀᅕ	57	교과학점	30	전공(선택,필수)
석박통합		연구학점	4	연구(선택,필수)

- ① 본 대학원 각과정의 이수학점은 대학원 학칙 제2장 제4절 제27조에 의거 전공선택과목, 타교실 전공선택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26학점 이상으로 하고, 박사학위 과정은 37학점이상이며 석,박사 통합과정은 57학점으로 한다.
- ② 학기당 이수학점은 변경된 대학원 학칙 제2장 제4절 제28조에 의거 12학점까지

로 하며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까지 가능하다.

- ③ 전공선택과목을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석사학위 전공 12학점,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박사학위 전공 18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전공필수과목은 대학원 의학과에서 학기별로 지정하는 3개의 전공필수과목 중 1 개과목을 선정하여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3과목(9학점),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4과목 (12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⑤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졸업전 이수무관(전공선택, 전공필수. 타전공) 3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⑥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및 타교실 전공선택과목 등은 석·박사학위 과정 중 중복은 피하여야 한다.
- ⑦ 개설과목 수가 적은 전공교실의 경우 전공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지도하에 타교실 전공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선택과목 인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과목이수구분신청서"필"-기말시험이후 제출)
- ⑧ 석사학위 과정에만 개설된 과목은 석·박사학위과정 학생 공히 수강신청할 수 있으나, 박사학위과정에만 개설된 과목은 박사학위 과정 학생만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학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모든 석·박사학위 과정 과목을 석·박사학위 과정 학생 공히 같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⑨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위과정 이수학점과 별도로 연구지도(연구지도1, 연구지도2) 총 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석사과정에서 연구학점(연구법, 석사논문연구) 총5학점은 이수하며, 박사과정에서는 연구학점(박사논문1, 박사논문2) 총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⑩ 석.박사 통합과정은 전공10과목 (30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제40조 (전공필수과목)

- ① 석·박사학위 과정에서의 전공필수과목은 학기당 2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한 과목을 선택하며, 동일과목을 2년(4학기)을 주기로 개설한다.
- ② 전공필수과목으로 분자생물학, 면역학, 종양학, 감염병학, 신경과학, 세포학, 독성학, 생식의학, 융합의료학, 의료인문학개론, 의학교육학개론을 설강하며, 연구필수과목으로는 의학연구방법론(석사 2학기 개설), 의학통계(석사 2학기 개설)를 설강하여야 한다.
- ③ 전공필수과목의 개설과 설강 및 운영책임자의 선정은 의학과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전공필수과목의 운영책임자 선정은 개강 6개월 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과목의 운영 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⑤ 석·박사학위과정을 통하여 같은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학수번호	과목명	개설연도	개설학도
MED8003	면역학	2020	1학기
MED8004	종양학	2020	1학기
MED8005	감염병학	2020	2학기
MED8006	신경과학	2020	2학기
MED8011	의료인문학개론	2020	2학기
MED8007	세포학	2021	1학기
MED8008	독성학	2021	1학기
MED8013	융합의료학	2021	1학기
MED8002	분자생물학	2021	2학기
MED8010	생식의학	2021	2학기
	의학교육학개론	2021	2학기

#### 제41조 (선수과목)

- ① 의학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는 타학과(전공) 입학자는 대학원 학칙 제2장 제4절 제30조에 의거 선수과목을 추가 이수하되, 선수과목의 선정은 해당 전공교실에서 각 개인 학생별로 정한다.
- ② 각 선수과목 중 3학점을 초과하는 과목은 3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선수과목의 이수는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42조 (종합시험)

- ① 대학원 학칙 제2장 제5절 제34조에 의거 학위과정별 전공별 종합시험 교과목수는 석사학위 과정은 전공3과목, 박사학위 과정은 전공 4과목이상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장 제2절 제14조에 의거 외국어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선수과목을 지정받은 경우 이수를 완료하고,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36학점이상 취득하였거나 해당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제43조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 ① 논문지도 및 논문지도위원회
- 1. 논문지도교수의 선임은 석·박사학위 과정 공히 1기에 하도록 하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 논문 지도교수는 정년 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 학 생을 2년 이상, 박사학위 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 할 수 있다.
- 2. 논문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의 수강신청, 수강계획 및 학점 등을 관리하고,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한다.
- 3.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가 될 수

있으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3조에 의거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는 학과주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이 논문지도교수로 승인할 수 있다.

- 4.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는 석·박사 과정을 합하여 4인내지 6인 이내로 하며, 특별한 증원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과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장이 이를 승 인하도록 한다.
- ② 논문 연구계획서
- 1. 석·박사과정 공히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기부터 제출할 수 있다.
- ③ 논문제출자격
- 1.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학위청구논문발표 이전에 권위있는 국·내외 학술지에 1 편 이상의 논문(부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2006년 1학기 이전 입학생에 적용)
- 2.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학위청구논문발표 이전에 SCI, SCI-E 등재 학술지, 학술진 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2편의 논문(부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2006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3.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학위과정 중) 학위청구논문 발표 이전에 SCI, SCI-E 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에 2편의 논문(본인이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인 경우 1편)을 발표하여야 한다. 증례보고는 상기 논문에 포함하지 않는다(2009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4. 학위청구논문발표 전 제출 부논문은 게재증명서도 인정한다. (2010년 9월이후 발표자부터 적용)
- 5. 학위논문은 논문심사 전에 학회지 등에 사전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
- 6.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기관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의무화한다.
- 7.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신청서 제출 이전에 SCI, SCI-E 등재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에 1편의 논문(본인이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로 1편)을 투고하여야 한다. 증례보고는 상기 논문에 포함하지 않는다.(Original artic le만 인정, 2018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④ 학위청구논문의 공개 발표
- 1. 박사과정 공개발표는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2. 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 심사 전에 지정된 공개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별도 공지)
- 3. 석사학위과정에서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발표는 의학과 학사위원장의 위임하에 지도교수가 실시한다.
- 4. 박사학위과정에서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발표자는 공개발표 2주 전까지 학위청구 논문의 개요를 의학과 학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도공지)
- 5. 논문의 발표는 의학과 학사위원장이 발표일정 및 장소를 결정하여 발표자에게 통고한다.

- 6. 박사학위 청구논문 발표시 지도교수는 참석할 수 없으며 지도교수를 제외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7. 박사학위 청구논문 발표 탈락자는 탈락통보 2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8. 박사학위 청구논문 발표 탈락자의 재심사는 1차 심사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심사시 지도교수가 참석할 수 있다.
- ⑤ 학위논문의 공표
- 1.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46조에 의거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44조 (의학과 대학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대학원 의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학과 대학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의학과 대학원 위원회의 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 5 장 의과대학 교수회 및 교육규정

## 제 1 절 총 칙

#### 제45조 (교수회)

의과대학 교육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전체 교수회(이하 전체교수회)와 주임교수회를 둔다.

#### 제 2 절 전체교수회

#### 제46조 (전체교수회의 구성)

전체 교수회는 전임 교원을 구성한다. 단, 휴직 또는 정직 중인 교수, 장기 해외 연수 중인 교수는 재적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47조 (전체교수회의 소집)

- ① 전체 교수회는 학기 당 1회 이상 개최하며, 학장 또는 재적 인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학장은 전체교수회의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부학장이 대행한다.
- ③ 총장은 전체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제48조 (전체교수회의 심의사항)

전체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 1. 주임교수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기타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및 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9조 (전체교수회의 성원)

의과대학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 시 소정의 양식에 의해 위임이 가능하나 위임자는 교수회의 성원에만 포함되며,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 3 절 주임교수회

#### 제50조 (주임교수회의 구성)

주임교수회는 학장, 부학장, 의학과장, 의예과장, 각 교실의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단, 주임교수의 유고시 그 차석 순으로 대행할 수 있다.

## 제51조 (주임교수회의 소집)

- ① 정기 주임교수회의는 학기 당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임시주임 교수회는 학장 또는 재적 인원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학장은 주임교수회의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부학장이 대행한다.

#### 제52조 (결정 사항의 고지)

학장은 주임교수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전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3조 (주임교수회의 심의사항)

주임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의과대학 조직에 관한 사항
- 2. 학칙 및 교과과정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칙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의과대학의 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5. 기타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및 의과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4조 (주임교수회의 성원)

의과대학 주임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 시 소정의 양식에 의해 위임이 가능하나 위임자는 의결 정족수에만 포함되며, 교수회의 성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 4 절 전임교원 교육 규정

#### 제55조 (신임교수 연수)

신임교원은 의학교육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임용 후 1년 이내에 신임 교수 대상 연수회에 최소 1회 이상, 총 15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제56조 (연구윤리)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57조 (인권교육)

대학 내에서 올바른 평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 주관의 인권교육(성평등, 차별금지 등)을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해당 구성원은 필수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 5 절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규정

#### 제58조 (교육과정 계획)

-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 관련 위원회의 교육과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 ② 개편은 정기개편과 수시개편으로 구분한다. 정기개편은 4년 주기로 하며, 수시개편은 매년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 ③ 교육과정 계획 시 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정 계획 시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료인문학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9조 (교육과정 실행)

- 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집행한다. 교육과정위원 회는 학장단이나 의과대학 교실의 이해관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 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0조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 ① 책임교수는 과정 종료 후에 과정 단위의 교육평가를 시행한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 교육 관련 위원회는 매년 주기적으로 시기 단위의 교육평가를 시행한다.
-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매년 주기적으로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평가를 시행한다.
- ④ 교육과정위원회는 정기개편 2년 전에 주기적으로 사명과 졸업성과를 검토하고 개선한다.

#### 제61조 (교육과정 피드백)

- ① 과정 평가와 강의평가는 해당 교수에게 피드백 한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분석 및 평가 결과는 보직교수회의에 보고한다.

#### 제62조 (교육과정 개선)

-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 ② 개선 계획은 정기 및 수시 개편에 반영한다.

#### 제63조 (교육과정위원회)

-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원으로 구성한다.
- 1. 교육과정위원회는 1명 이상의 교육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위원 교체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 4. 교육과정위원회에 학생 및 행정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정부와 대학의 법령 및 규정 내에서 특정 학과와 과목간의 이 해관계와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수학습방법, 학생평가와 과정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분배한다.

#### 제64조 (임상실습)

- ①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에 임상실습책임교수를 두며 의학과 임상실습을 운영한다.
- ② 학생은 감염 및 환경위험 노출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5조 (의과대학 교육의 확장)

- 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료원에서 교육과 수련을 마친 동문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졸업생의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 ② 국내외 유관 분야 기관과의 지속적 교류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의학 교육을 실천하고, 의과대학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 발전을 지향한다.

## 제 6 장 학생 활동

#### 제66조 (학생지도위원회)

학장이 의과대학 학생 지도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제67조 (학생지도교수제)

- ① 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지도를 위한 학생지도교수제를 실시한다.
- ② 학장은 매 학년 시작 후 10일 이내에 각 지도교수별로 6명이내의 학생을 배정하여 각 교수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③ 일단 배정된 학생은 졸업시까지 변동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상담요청에 따라 상담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8조 (동아리지도교수제)

- 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지도를 위한 동아리 지도교수제를 실시한다.
- ② 지도교수는 동아리로부터 추대 받은 전임교원 이상의 본교 교원으로 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 이상의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 ④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의 중요한 학.내외 행사에 참석하여야하며, 그 활동을 책임지도하여야 한다.

## 제 7 장 지속가능 발전 체계

#### 제69조 (만족도 조사)

의과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교육, 학생지원, 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0조 (학생주거현황 조사)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학습능률 향상을 위하여 매학기 학생들의 주 거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 의과대학 위원회 규정

## 공간관리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공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대'라 한다)내 모든 공간의 배정·변경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간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간'이라 함은 의대 내 인적·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건물공간을 말하며, 신·증축 및 개축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
- ② '공간관리'라 함은 관리처 승인 전 단계에서 공간의 배정, 변경에 대한 방법·기준을 정하여 1차적 논의·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배정'이라 함은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 등 기타 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의 사용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변경'이라 함은 공간명칭, 코드, 구조, 용도 및 면적 등 기 허가된 공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공간관리 기본원칙)

- ① 의대 내의 모든 공간은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한다.
- ② 배정 받은 공간에 대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 등을 임의로 변경할 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 소속 교수 또는 공간 담당 행정 직원이 한다.

#### 제7조 (임기)

위원장과 간사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간사)

- 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② 간사는 공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간코드, 호실 및 도면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또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하는 역할을 하며 모든 공문은 보관한다.

#### 제10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공간의 수요 예측 및 효율적인 배치·활용 계획 수립
- 2. 공간의 배정, 구조·용도 변경
- 3. 공간의 이전(재배치) 및 사용주체간 이견·불균형 조정
- 4. 공간사용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실태조사
- 5. 공간 코드·도면 및 현황 관리

#### 제11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학기 초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필요할 때 임시 회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보직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행과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 (소위원회)

본 위원회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부 칙

##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공포함과 동시에 건축실무위원회를 공간관리위원회로 변경한다.

##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학과 소속 교원의 연구, 교육, 봉사 영역에서 있어서 업적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학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학과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의학과장으로 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8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해당 연도의 교원 승진에 관한 업적 평가
- 2. 해당 연도의 교원 승급에 관한 업적 평가
- 3. 해당 연도의 교원 재임용에 관한 업적 평가

- 4. 해당 연도의 교원 정년보장에 관한 업적 평가
- 5. 기타 교원 업적평가와 관련된 기타 사항

## 제9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입학에서 졸업 및 졸업 후 교육까지 감안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학생 및 교수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1명 이상의 교육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 ③ 위원회에 학생 및 행정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학본부 처장급 이상 보직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의학교육진흥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원의 운영
- 2. 교과목의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4. 교과목의 폐지,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학점 배정에 관한 사항
- 6. 교육과정, 교육 방법 및 학생 사정 방법 등 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7. 교과목별 년간 강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8. 교실 단위 교육을 제외한 교과목 책임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 9. 교육과정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10.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의 학생임상실습교육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11. 교육 관련 위원회 (의예과위원회, 기초의학위원회, 장기계통위원회, 임상실습위원회, 인문사회의학위원회, PBL위원회, CPX위원회, 임상수기위원회, 임상종합평가위원회, 포트폴리오위원회)에 서울병원과 구리병원 소속의 내과계열, 외과계열 교수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 12. 서울병원과 구리병원별로 각각 임상실습교육 책임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개인의 정체성에 의한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항
- 14. 기타 교육과정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전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 1/3 이상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인문사회의학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학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예과 PMS(Patient-Medicine-Society), 의학과 PDS(Patient-Doctor-Society) 교과목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인문사회의학 관련 실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간사(1명) 및 위원(15명 이내)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의학교육진흥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 ②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6조 (임기)

간사를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중도에 바뀐 경우는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지휘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2. 교과목의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교과과정 운영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4. 교과목의 폐지,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학점 배정에 관한 사항
- 6. 교과과정, 교육 방법 및 학생 사정 방법 등 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7. 교과목별 연간 교육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8. 교실 단위 교육을 제외한 교과목 책임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 9. 교육과정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10. 개인의 정체성에 의한 차별없는 평등한 교과 운영을 위한 사항
- 11. 기타 교과과정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전 제 9 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 1/3 이상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기초의학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의과대학 기초의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학장 및 의학과 교육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위원장과 기초교수위원, 학생위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기초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학생위원은 매년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과대표 중 선정한다.
- ④ 행정직원은 의학과 교육과정 담당 직원이 참여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

교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행정직원)

행정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의결)

①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는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에 따라 학생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교육위원회에 건의한다.

- 1. 기초의학 교과과정 질관리에 관한 사항
- 2. 기초의학 교과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기초의학 교과목의 학습성과, 학습목표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초의학 교과과정 운영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5. 기초의학 교과목 폐지,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6. 기초의학 교과목 학점 배정에 관한 사항
- 7. 기초의학 교과목별 년간 교육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8. 기초의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 9. 기초종합평가 과목 결정, 학습지침서 작성 및 배포.
- 10. 문제출제에 있어서 문항 수 및 문제출제요령 등의 제반사항.
- 11. 기초종합평가 시험을 주관하고 성적을 산출.
- 12. 개인의 정체성에 의한 차별없는 평등한 교과 운영을 위한 사항
- 13.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의예과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의과대학 의예과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의예과 교육과 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위원장과 교수위원, 학생위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의예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학생위원은 의예과 1학년과 2학년 학생 중 선정한다.
- ④ 행정직원은 의예과 교육과정 담당 직원이 참여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

교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행정직원)

행정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의예과 교과과정의 질관리에 관한 사항.
- 2. 의예과 교과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의예과 교과목의 학습목표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의예과 교과과정 운영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5. 의예과 교과목 폐지,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6. 의예과 교과목 학점 배정에 관한 사항.
- 7. 의예과 교과목별 년간 교육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8. 교실 단위 교육을 제외한 교과목 책임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 9. 의예과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 10. 개인의 정체성에 의한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항
- 11.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 (의결)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는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임상실습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실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임상실습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생들의 임상술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 ① 위원장은 임상교육과장(서울)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실습 과목마다 대표 위원을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를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의과대학학생대표자 1인을 필수로 포함한다.

####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임상실습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② 선택실습에 관한 사항
- ③ 개인의 정체성에 의한 차별없는 평등한 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사항
- ④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장기계통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장기계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계통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통강의의 과목마다 대표 강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및 위원을 포함한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의학교육진흥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은 대표 교강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학생 대표자 1인을 필수로 포함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통강의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2. 계통강의의 운영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3. 계통강의의 교과과정, 교육 방법 및 학생 사정 방법 등 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4. 계통강의의 외부강사의 추천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5. 계통강의의 대표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6. 계통강의의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 7. 개인의 정체성에 의한 차별없는 평등한 교과 운영을 위한 사항
- 8. 계통강의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 (의결)

- ① 위원장은 전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 1/3 이상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과 권한) 장기계통 책임교수의 권한과 책임은 따로 정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CPX 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CPX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한다. CPX는 진료수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를 의미한다.

###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 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학장의 자문에 응하고 CPX관련 실무를 수행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학과 전 학년에 걸쳐 표준회환자를 활용한 진료시험을 총괄 조정한다.

####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간사(1명) 및 위원(15명 내외)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의학교육진흥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 ②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6조 (임기)

간사를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중도에 바뀐 경우는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 제 7 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지휘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CPX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2. CPX 운영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3. 교육단계별 CPX의 폐지,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학점 배정에 관한 사항
- 5. 학생 사정 방법 등 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6. CPX 연간 교육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7. 교실 단위 교육을 제외한 교과목 책임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 8. CPX 모듈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9. 기타 교과과정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전 제 9 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 1/3 이상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임상수기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수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OSCE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의학교육진흥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OSCE 과목 결정, 학습지침서 작성 및 배포.
- 2. 문제출제에 있어서 문항 수 및 문제출제요령 등의 제반사항.
- 3. OSCE 평가 시험을 주관하고 성적을 산출.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전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 1/3 이상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 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PBL 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PBL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한다. PBL은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을 의미한다.

####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 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학장의 자문에 응하고 PBL관련 실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간사(1명) 및 위원(20명 내외)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의학교육진흥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 ②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6조 (임기)

간사를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중도에 바뀐 경우는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지휘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PBL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2. PBL 운영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3. 교육 방법 및 학생 사정 방법 등 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4. PBL 모듈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5. 기타 PBL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전 제 9 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 1/3 이상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기초종합평가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의과대학 기초종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기초의학 과목에 대한 숙지상태와 이해도, 각 과목간의 상호연계성 및 종합적 이행능력 및 임상의학교육에 기본이 되는 기초의학 지식에 대하여 평가를 운영함에 있어 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초종합평가 과목 결정, 학습지침서 작성 및 배포.
- 2. 문제출제에 있어서 문항수 및 문제출제요령 등의 제반사항.
- 3. 기초종합평가 시험을 주관하고 성적을 산출.

- ① 위원회는 학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임상종합평가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종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종합평가 및 임상종합강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임상교육과장(구리)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2명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임상종합강의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를 선정하고 시간표를 작성한다.
- 2. 임상종합강의 참여교수의 강의록 작성과 수업에 협조한다.
- 3. 임상종합평가 시험을 주관하고 성적을 산출한다.

- ① 위원회는 학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포트폴리오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포트폴리오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교육 및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시기별 진급사정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간사(1명) 및 위원(10명 내외)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의학교육진흥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 ② 간사와 교수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③ 학생위원은 3학년과 4학년 과대표로 한다.

#### 제6조 (평가위원)

위원장이 대표성을 확보하여 포트폴리오 평가를 담당할 평가위원을 필요에 따라 시기별로 선임할 수 있다.

#### 제7조 (임기)

간사를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중도에 바뀐 경우는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 제8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지휘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10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2. 포트폴리오의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포트폴리오 운영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4. 포트폴리오관련 교과과정, 교육 방법 및 학생 사정 방법 등 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5. 포트폴리오 평가 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교과과정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전 제 10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 1/3 이상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한다.

#### 제12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한양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한양의과학자 양성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여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프로그램운영 전반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부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연구부학장을 포함하여 의학과 장, 의예과장, 의학연구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위원장)

- ①위원장은 예산운영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업무)

위원회는 한양의과학자 양성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 (회의)

- ①위원장은 제7조 사항에 대하여 회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 1/3 이상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 9조 (보고)

위원회는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과대학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

#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의 국제협력 제반사항을 기획, 실행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자문
- 2. 국제협력 사업 제안
- 3. 국제협력 사업 실행
- 4. 기타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의 기획, 실행 및 자문

##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의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위원으로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의학연구실장 3인으로 한다.
- ④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 제4조 (임기)

- ①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필요시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추천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 (회의)

-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 제6조 (의결)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전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 제7조 (예산)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한다.

## 제8조 (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발전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장·단기 사업 계획과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 운영 방향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학생대표, 동문 및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1. 연구, 교육 및 시설 등에 관한 장단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편성의 방향과 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생 및 임상교수의 연구 및 진료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
- 4. 제 기구, 학제, 직제 등의 조직의 합리화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5. 대외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6. 의과대학의 홍보에 관한 사항.
- 7. 의과대학 발전을 위하여 동문 및 지역사회 참여 방안.
- 8. 기타 의과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① 위원장은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1½이상 또는 학장의 요 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 지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발전기금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대외협력과 발전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기능)

본 위원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대외협력과 발전 기금의 조성과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의학과장, 학부모대표, 동문위원, 학생위원, 행정팀장 등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③ 간사는 RC행정팀원 중에서 해당업무 분장자로 정한다.

####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의 임기 내로 한다.

####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8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의과대학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2. 의과대학의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 3. 의과대학의 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제9조 (기금 출연)

기금의 출연 대상은 교수, 동문, 학부모, 대학(원)생, 기업체, 각 종 재단, 일반인(사회단체), 정부 및 기타로 한다.

### 제10조 (기금의 기탁 방법)

기금의 기탁은 일시, 분할 및 적립식 등으로 하며, 기탁자가 특정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다.

#### 제11조 (기금의 용도)

발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1. 교수의 연구, 교육, 및 봉사 활동 지원
- 2. 학생 복지와 관련된 장학금 지금 및 학생 자율 활동 지원
- 3. 의과대학 관련 건축물의 건립 지원
- 4. 기타 의과대학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 제12조 (기탁자에 관한 예우)

- ① 기금 기탁자에 대하여 학장 명의의 기탁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기탁자와 기탁 기관에 대하여 세제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 ③ 기탁자와 기탁기관에 대하여 명예동문으로 추대하며, 각종 학교행사의 초대, 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학기 초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필요할 때 임시 회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보직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행과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 (소위원회)

본 위원회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대학원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의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2. 교과목의 학습목표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교과과정 운영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4. 교과목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학점 배정에 관한 사항
- 6. 교과과정, 교육 방법 및 학점 사정 방법 등 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7. 교과목별 년간 교육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8. 교실 단위 교육을 제외한 교과목 책임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 9.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 10. 타 전공자 입학을 포함하는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
- 11. 기타 대학원 업무에 관련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제 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 1/3 이상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대학원 장학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장학 예산의 운영 정책과 장학생 선발 지급 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장학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4조 (구성)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 중 의학과장, 행정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의학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장학위원회 구성 및 규정
- 2. 장학생선발에 대한 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 3. 장학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4. 교내장학생 선정
- 5. 교외장학생 선정
- 6.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필요 사항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재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와 팀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보관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 제12조 (부칙)

기타 사항은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예산운영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예산운영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의과대학 예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본교 예산관리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의학교육진흥원장, 의학과장, 의예과장, 행정팀장, 의대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RC 자율예산운영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은 교무부학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둔다.

####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RC 자율예산 편성
- 2. 예산 운영관련 안건 심의
- 3. RC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
- 4. 결산 관련 사항
-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

#### 제4조의2(구성원 의견수렴)

위원회는 RC 자율예산 편성시 의과대학 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7조 (회의록)

-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인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회의록은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의학정보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정보(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사명 수행에 필요한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의 정보화 및 학술정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의학학술정보관(서울, 구리)의 사서 각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2명 내외의 학생위원을 둔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의과대학 의학정보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임기)

- ①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② 그 외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의학학술정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 2. 의과대학 대표 홈페이지 및 기타 관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3. 의학교육 수행을 위한 기타 전산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사항

## 제10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전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 1/3 이상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학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 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의학교육평가인증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평가인증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자체평가와 의학교육 질 향상에 필요한 기본 운영방향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을 포함하되 별도의 인원 수 제한 없이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은 부학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학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의학과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 주재 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둔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성과바탕 교육에 입각한 의과대학의 자체평가연구의 기본 방향설정
- 2. 자체 평가연구 기획 및 수행
- 3. 자체 평가연구 보고서 작성
- 4. 자체평가와 관련된 지적사항의 점검 및 개선방향 도출
-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

# 제8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 (회의록작성)

-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의과대학에 비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인사심의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 인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명칭)

인사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약칭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위원회에 관하여 법령, 정관, 대학 및 의료원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학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의학과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을 추천에 의한 투표로 다수 득표 순으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 (회의개최)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회의록작성)

-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의과대학에 비치한다.

# 제7조 (업무)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세칙으로 정한다.
- 1. 교원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 2. 교원의 정원 및 신규 임용의 계획 수립
- 3. 교원의 승진, 승급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 4. 교원의 인사 배치 및 교류 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 (운영)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의학과장은 간사가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④ 해당 교실 주임교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 ⑤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해당 교원이 불복 시 해당 교원에게 소청의 기회를 부여한다.

# 제9조 (기밀 유지)

- ① 인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 된 사항 중 위원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외의 모든 회의 안건과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 제10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입학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의과대학 입학업무를 위해 의과대학 내 설치하는 입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위원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본교 입학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지원자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의과대학 교원 중 학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본교 입학처 교직원을 포함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대한 사항
- ② 입학전형 관리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 ③ 입학적격자 선발 기준 모형 개발에 대한 사항
- ④ 입학 전형 유형, 요소, 모집시기 등 입시와 관련된 주요사항
- ⑤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한 입학전형 수립 관련 사항

#### 제6조 (회의)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재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적 목적 이외에는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 (부칙)

기타 사항은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장학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장학 예산의 운영 정책과 장학생 선발 지급 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장학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4조 (구성)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 중 의학과장, 행정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의학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장학위원회 구성 및 규정
- 2. 장학생선발에 대한 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 3. 장학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4. 교내장학생 선정
- 5. 교외장학생 선정
- 6.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필요 사항

# 제10조 (회의)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와 팀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보관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 제12조 (부칙)

기타 사항은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졸업후연수교육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후 연수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졸업후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 운영을 지원하며,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연수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 한다.

## 제4조 (구성)

위원장과 교수위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의학교육진흥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교수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행정직원은 의과대학 행정팀 행정업무 담당 직원이 참여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② 그 외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행정직원)

행정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졸업후연수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2. 졸업후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3. 졸업후연수교육 프로그램 책임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 4. 졸업후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성과 및 질관리에 관한 사항.
- 5. 의과대학 재학생 참여 지원과 관련된 사항.
- 6.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 (회의)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진급사정 및 소명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의과대학 진급사정 및 소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습 평가, 유급, 시기별 진급사정, 졸업 사정과 이에 대한 학생의 소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학장, 교무부학장, 의학교육진흥원장, 학생부학장, 의학과장, 의예과장, 의과대학 학생대표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5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학생의 학습 평가, 성적 사정에 관한 사항
- 2. 학생의 유급, 졸업 사정에 관한 사항
- 3. 각 시기의 종료 시점 전에 시행하는 진급사정
- 4. 각 시기의 총괄 평가 성적, 시기별 종합시험, 형성 평가 자료 (예, 포트폴리오) 등을 진급 사정 심의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과 위원이 직접 면담을 할 수 있음.
- 5. 기타 필요 사항

#### 제7조 (학생의 소명 신청 및 고지)

- ① 학생은 학생의 학습 평가, 유급, 시기별 진급사정, 졸업 사정에 대해 이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명 신청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소명 신청된 건의 적합성을 평가한 뒤, 해당 건의 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학생에게 고지한다.
- ③ 학생이 공식적인 이의제기 및 소명 신청 외의 방식으로 부당한 성적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진급사정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한다.

## 제8조 (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 ① 위원장은 학생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출석예정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 (소명 결과의 재심의)

- ① 소명 결과를 통지 받은 학생은 소명 결과에 대해 위원장에게 재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소명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2.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제10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진급사정을 각 시기의 성적입력 완료시점 전에 회의를 소집한다.
- 1. 제 1시기, 의학과 1학년 1학기까지
- 2. 제 2시기, 의학과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 3. 제 3시기, 의학과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졸업 전까지
-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회에서 유급으로 결정된 학생은 다음 시기로 진급하지 못하며, 제 1시기의 학기 혹은 제 2,3시기의 마지막 학년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⑤ 해당 학생의 요구 혹은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재심을 1회에 한하여할 수 있다.

#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② 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회의 내용 기록 및 보관)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 유 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질관리개선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질관리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 ① 본 위원회는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학생지원, 시설 및 교육자원 관리, 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 등 전반적인 운영의 지속적인 질관리 및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며, 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② 의과대학 학장은 질관리개선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은 질관리개선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 선정 시 의과대학 보직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연속적인 질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질관리개선위원회 구성 시 이전 임기의 위원을 1/3이상 포함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 임기 중 보직임명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제외되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위원의 대체위원을 선정하여 임명을 제청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의과대학 학생의 입학에서 졸업 및 졸업후 교육까지의 전반적인 교육의 과정 운영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및 피드백
- 2. 의과대학 교육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
- 3. 의과대학 연구지원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
- 4. 의과대학 학생지원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
- 5. 의과대학 시설 및 교육자원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
- 6. 의과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
- 7. 의과대학 운영에 대한 학장 자문
- 8. 의과대학 학장단(학장 및 부학장, 주요 보직자)에 대한 평가
- 9.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활동 자문,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피드백

# 제9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의 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 다.

## 제4조 (구성)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의과대학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
- 2.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 (회의)

- ① 위원회는 학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이름을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지도, 학생회 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 권리, 복지 및 안전을 포함한 효율적 학생관리 업무와 징계 조치에 대한 학생의 소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부학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학장이 임명하되 본부 학생처 학생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생회 대표를 학생위원으로 둔다.
-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

## 제8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 2. 학생회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의 지도에 관한 사항
- 3. 학생 논문 발표회 지도에 관한 사항
- 4. 의과대학 학생의 상벌에 관한 품의
- 5. 학생지도교수제 지도결과보고서의 건의 사항

- 6. 학생의 정학 및 퇴학 등 징계 조치에 관한 소명사항
- 7. 기타 필요 사항

# 제9조 (학생의 소명 신청 및 고지)

- ① 학생은 징계 조치에 대해 이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명 신청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소명 신청된 건의 적합성을 평가한 뒤, 해당 건의 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학생에게 고지한다.

# 제10조 (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 ① 위원장은 학생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출석예정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 (소명 결과의 재심의)

- ① 소명 결과를 통지 받은 학생은 소명 결과에 대해 위원장에게 재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소명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2.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제12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② 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회의 기록 및 보관)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 유 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의학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학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의학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의학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 를 둔다.

####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과대학 학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 제4조 (업무)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의학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장, 단기 사업계획 및 기본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2. 의학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자료 수집 등 관련 제반 사항
- 3. 기타 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5조 (회의)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6조 (보칙)

의학역사박물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과발전 산업연계교육자문위원회 (IAB) 내규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이 하"본교"라 한다)의 학과(전공)별 산업연계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시대의 요구를 반 영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발전 산업연계교육자문위원회(IAB : Industry Advisory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 다

- 1.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 개편 자문
- 2. 산업연계 교과목 개발 자문
- 3. 산업연계 개발 교과목의 담당 강사 추천 및 참여
- 4. 학과 경진대회 및 행사의 초청강사·심사위원 추천 및 참여
- 5. 학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자문
- 6. 학생 현장실습 관련 자문
- 7. 학생 진로교육 및 취·창업 자문
- 8. 학과 및 대학 추진활동 홍보
- 9. 산학협력기금(장학, 연구, 발전) 후원 자문
- 10. 기타 학과발전과 관련한 사항 자문

#### 제 2 장 조 직

####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학과(전공) 관련 산업체 임원 및 실무책임자, 학계 및 연구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되, 직능별 및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각 학과(전공)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학과(전공)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 (임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1인
- 3. 간사 1인

## 제6조 (임원의 선임)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산업체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② 간사는 해당 학과(전공)소속의 교직원으로 한다.

#### 제7조 (임원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학과(전공)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또한 위원장은 단과대학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8조 (단과대학 및 본부 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학과 위원회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단과대학 및 본부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단과대학 위원회의 위원은 각 학과(전공)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본부 위원회의 위원은 각 단과대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③ 단과대학 및 본부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단과대학 학장 및 본교 총장이 필요시소집할 수 있다.
- ④ 단과대학 위원회의 간사는 각 단과대학의 행정팀장으로 하며, 본부 위원회의 간

사는 교무처 학사팀장으로 한다.

# 제 3 장 회 의

# 제9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③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제10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규정

# 의학교육진흥원 내규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84조(부설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의학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조직, 수행 역할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업)

- 이 진흥원은 의학교육의 수월성 확보 및 의과대학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기획, 운영, 평가
  - 2. 교수 역량 향상 및 학생 지원
  - 3. 의학교육평가인증 대응
  - 4. 의학교육 R&D 수행
  - 5. 의과대학 운영 모니터링 및 질 관리

# **제3조** (소재지)

이 진흥원은 본교 서울캠퍼스에 둔다.

# 제 2 장 조직

# **제4조** (구성)

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진흥원장
- 2. 위원회
- 3. 학생상담실
- 4. 의료인문학교실
- 5. 의학교육학교실
- 6. 행정팀

#### 제5조(진흥원장)

①진흥원장은 의과대학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②진흥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여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③진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①진흥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당연직을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학장이 임명한다.

# 제7조(학생상담실)

①학생 지도 및 상담지원을 위하여 학생상담실을 둔다. ②학생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장을 둘 수 있으며, 학장이 임명한다.

#### 제8조(의학교육학교실)

진흥원의 교육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학교육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학교육학교실을 협력조직으로 둔다.

#### 제9조(의료인문학교실)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의료인문학교실을 협력조직으로 둔다.

#### **제10조**(행정팀)

①진흥원의 전반적인 행정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팀을 둔다. ②행정팀에는 약간 명의 교수 및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③진흥원 교수는 의학교육학교실소속 교수(겸무교수 포함)를 진흥원 소속으로 겸직한다. ④직원 및 연구원, 조교의임명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을 따른다.

# 제 3 장 위원회

#### **제11조**(위원회)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
- 2. 기타 필요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

## 제12조(구성)

진흥원의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는 진흥원장, 진흥원 교수, 의과대학 행정팀장으로 구성한다. 진흥원 운영상 필요할 경우 진흥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추가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장 당연직으로 한다.

# **제13조**(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운영위원회
  - 가. 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 나. 진흥원의 규정 등의 제(개)정
  - 다. 진흥원 운영을 위한 직원, 연구원, 조교 등에 대한 인사
  - 라. 기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14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장 재정

#### **제15조**(재정)

- 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의과대학 RC 예산
  - 2. 의과대학 발전기금
  - 3. 기타 연구지원금 및 수익금

#### **제16조** (재정의 운용)

①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진흥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익년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01.04.)

# 의과대학 임상실습 내규

#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의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임상실습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환자 존엄과 가치)

학생은 모든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유념하고 항상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존엄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제3조 (환자 사생활 비밀유지)

학생은 환자의 육체적, 의학적 관련사항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문제와 가족력 등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조 (직업전문성)

학생은 환자진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학적 지식과 술기들을 습 득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환자의 복지와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태도)

- ① 학생은 환자 및 보호자, 동료, 교수진, 병원직원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 신뢰에 바탕을 둔 대화술과 기본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 ② 학생은 환자들과 대화가 필요할 때는 신분을 밝히고 정중히 대하여 한다.
- ③ 학생은 환자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환자와의 사적인 교류(병원 내 외 및 유무선 상의 교류 등)는 절대 금하며, 진료목적으로 가진 환자와의 사적인 교류에는 반드시 실습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은 의료팀의 일원으로 책임을 성실히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가 바라는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성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학생의 환자진료행위)

- ① 학생은 환자진료에 관한 모든 의료행위를 실습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 ② 학생은 환자진료에 관한 모든 의료행위를 환자 안전에 바탕을 두고 행하여야 한다.
- ③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위생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손위생은 투약시,

수술/시술 전후, 청결/무균 처지 전, 체액/분비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수행하는 임상술기에는 기본임상술기와 관찰술기로 구분하며, 기본술기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실제 경험하여야 하는 술기이며, 관찰술기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적어도 1회 이상 관찰하여야 하는 술기이다. 학생은 임상술기 실습 시에 목적과 방법, 절차, 적응증, 금기 및 위험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 임상술기에 대해서는 순에 맞춰 제대로 실행하여야 하고, 환자와 환자 안전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7조 (포트폴리오의 작성 및 보관)

학생은 실습 과정 전반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정별 성과 평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임상실습책임교수는 해당과 실습 종료 시 포트폴리오를 실 습평가에 반영하고 이의 복사 파일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 (학생의 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

학생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경우 학생의사 의무기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의무기록은 공식적인 병원 문서로서 보관하지 않으며 임상실습책임교수의 책임 하에 별도 보관할 수 있다.

# 제9조 (학생과 관련된 의료과오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학생과 환자 또는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료과오에 대해서는 해당학생은 즉각적으로 임상실습책임 교수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이후의 대처는 임상실습책임교수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용모 및 복장)

학생은 용모와 복장을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여 환자나 그 가족에게 불쾌 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환자진료행위 중에 집중을 방해하거나 행동에 제한을 주는 용모와 복장은 금한다.

#### 제11조 (임상실습 영역)

임상실습은 정규 임상실습과 종합선택실습 1,2,3으로 구분하며 종합선택실습은 국제 화프로그램, 자유선택실습, 학생인턴제를 포함한다. 학생인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규정한다.

#### 제12조 (징계)

본 내규를 위반 시에는 학칙, 상벌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

## 의과대학 학생인턴제 임상실습 내규

##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의과대학 임상실습 내규에서 정한 임상실습 내규 이외에 학생인턴제 임 상실습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상 및 시행 과목)

학생인턴실습은 의학과 4학년 학생(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 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신경과 등 핵심과목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제3조 (강좌의 개설 및 선택)

시행 과목을 대상으로 교실별, 병원별, 또는 교수별로 2주 단위의 강좌를 개설하며 학생은 동일 과목 내에서 두 개의 강좌를 선택하여 실습하여야 한다.

### 제4조 (기간)

학사일정에 정한 3학년 동계방학, 종합선택실습2, 종합선택실습3, 4학년 하계방학기간 중에 개설된 강좌를 선택하여 총 4주간 실습을 진행한다.

### 제5조 (실습내용)

학생인턴제 실습은 실습지침서에 따라 정규 임상실습과 차별화하여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1. 모의처방: 학생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모의처방전을 작성하고 담당교수는 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시행한다. 평가와 피드백을 마친 모의처방전은 학생이 포트폴리오로 보관한다.
- 2. 처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담당교수 혹은 전공의의 지도하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포트폴리오 실습일지에 기록 후 보관한다.
- 3. 당직: 실습 시행과의 사정에 맞추어 전공의와 병동 당직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정된 학생인턴 당직실에서 호출대기한다. 단, 당직일수는 전공의 협의회 기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6조 (기타)

위 조항 이외의 사항은 임상실습 내규와 임상실습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단기 학회 참가지원 규정

## 1. 교원의 국내/외 학술여행 분류

	구분	여행 목적	여행 회수 제한 여부	신청방법	결과 보고	경비지원	
구	학기중	학술 활동	학기당 3회 이내로서 통 산 15일을 초과할 수 없 음(토,일 포함)	출장보고 →학장승인 →결과보고	0	국외 학술대회 논문	
외	국 학기중 구남 외 (공휴일) 없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0	발표자 지원금(학기 당 1회에 한함) 신청	
	방학중	구분 없음	범위에서 가능	출장보고 →학장승인	0	가능	
	학기중	학술 활동		출장보고	0	국내 학술대회 논문 발표자 지원금(학기	
국 내	학기중 구분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 없음 범위에서 가능		→학장승인	0	당 2회에 한함) 신청 가능		
	방학중	구분 없음		별도 신청 절 차 없음	0	해당없음	

- ※ 실제여행기간 기준임. 학기중 공휴일에도 일괄 적용됨
- ※ 의과대학 임상의학 전임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2. 논문발표자 학술연구지원비 지원 기준

가) 국외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참가지원금

구 분	미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하와이	동·중앙아시아
지원액(원)	500,000	400,000	250,000

※ 학기당 1회에 한함. 중복지원(초청기관, 타기관, 교내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불가.

## 나) 국내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참가지원금

구분	수도권	제주도	부산 경남권	광주 전남권	대구 경북권	전북권	대전 충청권	강원도 권
1일 지원액(원)	-	160,000	90,000	70,000	70,000	60,000	40,000	50,000
1박2일 이상 지원액(원)	-	200,000	130,000	110,000	110,000	100,000	80,000	90,000

※ 학기당 2회에 한함

# 의과대학 지도교수 배정 세칙

- 1. 신입생 및 퇴직교수가 지도했던 학생 등 새롭게 지도교수 배정이 필요한 경우, 교실과 상관없이 ① 신임교수, ② 교수 1인당 평균 지도학생 인원 보다 적은 교수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 2. 휴·복학, 유급 학생은 기존의 지도교수에게 배정한다.
- 3. 만 60세 이상 교수들은 기배정된 지도학생만 유지하고 신규배정하지 않는다. (60세 이상 표기)
- 4. 지도교수가 퇴직을 제외한 연구년, 장기연수, 휴직 등 복무변동이 있을 경우, 동일한 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교수에게 해당기간동안 위임배정 하고 복직 시 환원한다. (사유표기)
- 5. 학년별 지도교수는 보직교수 중에서 배정하여 분담한다. 1학년- 연구부학장 / 2학년- 교무부학장 / 3학년-서울 교육과장 / 4학년- 구리 교육과 장
- 6. 동일한 학년이 한 교수께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것을 지양한다.
- 7. 의과대학 전임교원만이 의과대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내규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교원인사규정 제19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의과대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신규채용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채용구분)

- ①교원의 채용은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 ②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은 국내외의 석학초빙 또는 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원 초 빙 등을 위해 특별채용을 시행한다.

## 제3조 (교원채용계획)

의과대학장은 본교 교원채용계획에 따라 교실별 모집대상 전공분야 및 인원을 파악 하여 교원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교무처에 송부한다.

#### 제4조 (채용공고)

총장은 교원을 공개경쟁으로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 한다.

### 제5조 (채용대상자 제한)

- ①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특정대학 출신비율을 관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누적 모집인원을 통산하여 관리한다.
-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채용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직원을 제출한 후 지원할 수 있다.

## 제 2 장 공개 채용

## 제6조 (온라인지원 및 서류접수)

- ① 교원공개채용은 온라인으로 지원사항 등을 접수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 받는다.
- ② 온라인 지원 등록내용 또는 서류의 중대한 사항에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합

격 취소는 물론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 제7조 (공개채용심의회 구성)

- ① 공개채용 1단계 및 2단계 내부 심의회는 의과대학장, 의학과장, 채용분야 교실주임교수 및 관련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원자의 학위논문지도교수, 친인척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③ 심의회 위원은 본인이 특정한 지원자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일체의 심사를 중지하고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교체를 요청하여 재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심의회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제8조(심사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연구 및 교육 분야와 모집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심사
- 2. 전공심사(서류 및 면접 병행):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산학·책무실적 및 잠재적 역량, 발전가능성, 교육 및 연구·산학·책무 계획의 충실성, 학업 성취도, 대외활동, 강의역량, 교육자적 자질·열정 및 봉사 등에 대한 심사. 다만, 임상의학분야의경우 지원자에 대한 진료 역량 등의 심사를 포함함.

### 제9조 (심사단계)

- ① 1단계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공개채용심의회에서 기초심사, 전공심사를 한다.
- ② 각 단계별 심사 항목과 반영비율은 <별표1>과 같다.
- ③ 심의회위원 개인별 심사는 1단계의 경우 A, B, C 단위로 평가한다.
- ④ 2단계 심사에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전공분 야별 공개채용심의회에서 기초심사, 전공심사(서류 및 면접 병행)를 한다.
- ⑤ 심의회위원 개인별 심사는 2단계 기초심사의 경우 A, B, C 단위로 평가하고 2단계 전공심사의 경우 A(100점), B(90점), C(80점), D(70점), D(65점), E(60점) 단위로평가하여 배점한다.
- ⑥ 심의회에서는 2단계 심사를 하는 때 심사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심의회에서는 2단계 심의결과를 본교 교무처에 송부하며, 이후 절차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장 특별 채용

### 제10조 (특별채용심의회 구성)

- ① 특별채용심의회의 인원은 특별채용 인력풀 조사와 심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② 특별채용심의회의 제척사유 등에 대하여는 공개채용심의회를 준용한다.

## 제11조 (특별채용절차)

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국내·외 전공인력풀 조사 및 자료검증를 하며 약간명의 후보자를 본교에 추천한다.
- 2. 대학으로부터 추천한 특채후보자들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져 통보되면 의과 대학 특별채용심의회에서는 특채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한다. 이 경우 특채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 3. 의과대학 특별채용심의회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업적사항에 관한 조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를 통합하여 시행하거나 절차 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4 장 임용 절차

#### 제12조 (합격자 통보)

- ① 의과대학 심의 후 본교에 제출한 심의조서 및 본부 면접결과를 참고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 ② 합격자 통보는 교무처에서 발송하는 합격통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정보 시스템과 이메일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 (임용서류제출)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채용통보를 받은 채용예정자는 인적사항과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계약사항)

신규채용자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5 장 교원의 책무

#### 제15조 (교원의 책무)

- ① 채용심의시 제8조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책무에 적합한지 심의한다.
- ② 교원의 책무는 계열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초의학교원 : 기초의학 연구를 수행하고 의학연구의 자세와 방법, 임상의학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여 의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2. 임상의학교원 : 임상의학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의학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 진료를 수행하여 의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3. 의학교육학교원 : 의학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의학교육 실무에 적용 및 학문발전을 도모하며 교육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4. 의료인문학교원 : 의료인문학 연구를 수행하고 사람과 사회를 깊이 이해하며, 관계 유지, 소통과 협력, 법과 윤리 준수 등의 역량을 갖춘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여 의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③ 특별채용의 경우 추가적인 책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 6 장 기 타

### 제16조 (공정심사 의무위반)

- ① 심의회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심사를 한 자 또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의회 위원이 아닌 자가 교원채용심사를 고의로 방해하였거나, 부정할 목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본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행위를 한 자가 본교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17조 (준용)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과대학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는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이 내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교원신규채용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별표1> 공개채용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

단계	심사구분	심사항목 _			비율 임상] 외부 심의회	평점 만점	선정기준	
	기초심사	연구·교육·	분야 전공일치도	심 <u>의회</u> A,B,C	-			
1단계	전공심사		실적 잠재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 -혜실적, 국제교류활동 포함)	A,B,C	-		기초심사와 전공심 사를 바탕으로 본부 심사에서 후보자 중 6배수 내외 선정	
	종합심사	연구·교육·	산학 종합평정			P/F		
	기초심사	연구·교육·	분야 전공일치도	A,B,C	A,B,C			
	전공심사	연구·산학	실적(연구비 수혜실적 포함)	35%	25%			
1 -11		(연구·산학	잠재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 · 계획과 가능성, 국제교류활 ŀ정 성적 등 포함)	정성 (12%)	정성 (8%)		기초심사와 전공심 사를 바탕으로 본부	
2난계			강의 역량(영어강의포함)	10%	-	100	심사에서 후보자 중 2배수 내외 선정	
			교육자적 자질·열정 및 봉사	10% (5%)	-			
			진료 역량	(5%)	-			
	종합심사	연구·교육·			P/F			
	면접심사	연구계획의 육자적 지 사위원회)	학문적 발전 가능성, 교육 및 의 충실성, 국제교류 역량, 교 P질·열정 및 봉사 등 (교원인	-		P/F	채용후보자 선정	

<sup>※( )</sup>는 임상의학 전공분야 심사의 경우에만 해당됨.

<sup>※1</sup>단계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2단계 기초심사의 개인별 심사는 A, B, C로 평가 하면, 종합심사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 여부를 정함.

<sup>※2</sup>단계 전공심사의 개인별 심사는 A(100점), B(90점), C(80점), D(70점), E(60점) 단위로 정량평가 함. 다만, 2단계 전공심사의 '연구·산학 잠재적 역량 및 발전가 능성'에 대한 심사는 정성평가로 제출받은 레퍼런스를 포함하여 평가함.

<sup>※2</sup>단계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는 내부 심의회와 외부 심의회 평가결과를 별도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의과대학 주임교수 임명과 책무 내규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제규정 제9조에 따라 임면하는 의과대학 교실 주임교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실)

의과대학의 학생교육, 학술연구 및 의료원 진료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실을 둔다.

1. 기초의학(12개)

해부·세포생물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병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환경의생물학교실 약리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유전학교실 의공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의료인문학교실

2. 임상의학(24개)

내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

실

산부인과학교실정신건강의학교실미부과학교실비뇨의학교실이비인후과학교실안과학교실영상의학교실방사선종양학교실진단검사의학교실치과학교실성형외과학교실재활의학교실가정의학교실직업환경의학교실핵의학교실응급의학교실

#### 제3조 (교실의 신설)

- ① 교실의 신설은 해당과의 규모, 교육, 학술연구 및 진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시 신설할 수 있다.
- ② 1항의 교실의 신설은 주임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의과대학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승인한다.

#### 제4조 (임명)

- ① 주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주임교수는 가능한 한 교수직급으로 임명한다.

## 제5조 (임기)

- ①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주임교수의 임명은 학장이 추천하되, 학장은 해당 교실의 제청을 제고하여 임명 추천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해외연수, 건강상 이유, 견책 및 기타 징계를 포함한 상당한 사유로 인해 주임교수직을 수행 못하는 경우에는 학장이 해당교실의 주임교수를 면직하고 재추천 임명할 수 있다.
- ⑤ 주임교수의 임기내 면직은 면직에 해당하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 학장이 시행한다.

## 제6조 (주임교수 책무)

주임교수는 대내외적으로 교실을 대표하고 교실업무를 총괄하며, 각 병원 임상과장과 혐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생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2.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관리감독
- 3. 각 교실의 합동연구 및 학술회의 주관
- 4. 전체 의국회의 주관
- 5. 해당교실 교원의 해외연수 추천
- 6. 교수 채용 및 승진 추천
- 7. 임상교수 및 전공의 순환배치 및 관리감독
- 8. 의과대학장이 부여하는 업무수행
- 9. 기타 교실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 (주임교수 수당)

주임교수에게 확고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소정의 보직 수당을 지급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3.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명칭변경) 이 내규 공포 이전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 임용과 책무 내규" 를

본 내규로 변경한다.

# 의과대학 학생상담 운영 내규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학생상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학생상담이라 함은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지도를 뜻한다.

## 제3조 (업무)

상담실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 다.

- 1. 생활 및 장학상담
- 2. 학습상담
- 3. 심리상담
- 4. 정신건강 상담
- 5. 기타 학생지도 상담

### 제4조 (조직)

- ① 학생상담실은 의과대학 건물 내에 독립공간으로 둔다.
- ② 전문상담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장이 임명하여 의과대학 학생상담실에 겸직한다.
- ③ 상담관련 업무담당 직원 또는 조교가 전문상담교수의 업무를 지원한다.
- ④ 매년 10명 이내의 교원을 학생상담위원으로 위촉한다.

## 제5조 (상담)

- ① 전문상담교수와 학생상담위원은 연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당해연도의 학생상담 시행방안을 결정한다.
- ② 학생상담위원은 배정된 상담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교내 전산 (HY-CDP)에 입력하고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 ③ 위원은 상담활동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추가상 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수와 상의할 수 있다.

## 제6조 (보고)

전문상담교수는 당해연도 상담활동을 학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 (기타)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상담업무에 대하여는 본교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의 지침 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제화프로그램 장학금 지급 내규

##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제화프로그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대상)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국제화프로그램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장학금 지급원칙)

국제화프로그램장학금의 선발인원 및 금액은 의과대학 보직자회의를 통해 정한다.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① 국제화프로그램 장학금 재원은 국제화 선도사업 예산으로 한다.
- ② 장학금 지급시기는 프로그램 시작 전 12월 중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선발 기준)

국제화프로그램 장학생 선발기준은 실습국가, 기관,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과대학 보직자회의를 통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제6조 (장학생 의무)

국제화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은 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제7조 (장학 대상 제외)

직전학기 평점이 2.0 미만인 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과대학 보직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부 칙

###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내규는 2017년 3월부터 시행한다.

# 한양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규정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한양의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선발, 운영, 관리 방침에 관한 내규이다.

### 제3조 (선발)

프로그램 참여 학생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절차로 진행한다.

- ① 선발 기준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 참여 신청 대상은 의학과 4학년을 제외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부 재학생 전체로 한다.
- 2. 프로그램 참여 학생 선발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② 선발 일정 및 참여 학생 모집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 1학기 초에 프로그램 참여 교수를 모집한다. 한 교수 당 1개 연구주제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2개까지 신청 가능하다.
- 2. 상기한 대상자에게 참여 교수의 연구주제를 공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한다.
- 3.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연구 주제별 학생 1명을 선정한다.
- 4.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은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최종 선정자 공고는 선정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개별 공지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③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 지원자는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담당직 원에게 제출한다.
- 2. 지원자는 참여 교수 연구주제를 3개까지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다.
- 3. 프로그램 지원자는 전 학년 과정 중 2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 제4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은 다음과 같은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 ①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 매 년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 선정 종료 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 2. 오리엔테이션 진행 목적은 운영 및 지침 전달에 있으며 전년 대비 보완 사항 및 수정 사항을 공지한다.

- 3. 모든 선정 학생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 참여 학생은 2학기 1학점 전공과목(의학연구프로젝트1 또는 의학연구프로젝트2)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 2. 참여 학생은 전체 기간 중 총 30시간 이상의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 3. 참여 학생은 연구시설물 사용 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 4. 참여 학생은 연구자 필수 교육(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등)을 수 강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5.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의대RC 행정팀의 행정직원 1명을 프로그램 담당직원으로 배치한다.
- ③ 프로그램 운영 중 다음과 같이 발표회를 진행한다.
- 1. 중간발표회 : 8~9월 중 시행
- 2. 최종발표회 : 11~12월에 시행
- ④ 각 발표회에 맞추어 작성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의 기준에 맞추어 관리한다.
- 1. 중간보고서는 총 1회 작성하되 중간 발표회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 2. 최종보고서는 발표회 때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연구시설 사용기록, 교육 이수증을 포함한 보고서 양식(별지 제 2호 서식)에 작성하여 최종 발표회 이후 1주 이내에 제출한다.
- 3. 보고서 작성 중 인용은 명확하게 하며, 표절, 허위작성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학생 평가에 감점한다.
- 4. 작성된 보고서 내역은 5년간 보관한다.
- ⑤ 각 과제 운영지원을 위하여 과제 당 55만원의 운영비를 연구 지도교수에 지급하며, 연구 지도교수는 해당 운영비를 활용하여 과제를 진행한다.
- ⑥ 과목 성적은 다음의 기준에 맞추어 산출하고 관리한다.
- 1. 연구 지도교수는 '의학연구프로젝트 학생 평가서' 양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공과목 대표 교강사는 연구 지도교수의 학생 평가 성적을 80% 반영하고 발표회 평가 점수를 20% 합산하여 과목의 최종 성적을 산출한다.

## 제5조 (예산)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 운영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른다.

- ① 프로그램 예산은 의과대학RC 행정팀 담당자가 관리한다. 다만 산학협력단 예산에 대한 집행은 의학연구지원센터 행정직원이 대행한다.
- ② 프로그램 예산은 매년 의과대학RC 행정팀 담당자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회기 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연구과제별 운영비는 중간 발표회 자료를 근거로 집행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보고서와 논문 게재 등 성과물을 취합하여 내부 보고하고, 운영비 지급의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 ④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주저자로 SCI(E) 논문을 게재하고 프로그램을 사사한 경우 2백만원 한도 내에서 게재료를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연구비로 게재료가 지원되었거나 산학협력단의 게재료 지원을 수혜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SCI(E) 논문을 게재한 경우 이를 포상하고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프로그램 참여 교수로 학생지도 실적이 우수하고,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경우 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로상을 수여하고 연구장 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6조 (공간)

'한양의과학자 양성프로그램 참여학생 연구실 사용원칙'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3.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운영 프로그램부터 소급 적용한다.

# 학생 연구시설 사용지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과대학 학생(이하 "학생")이 연구시설 사용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용)

- ① 학생은 연구시설 사용시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연구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학생은 연구실 사용시 [별표] 실험실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제3조 (일반수칙)

학생은 연구시설 사용시 다음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실내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 2. 실험, 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음식물 등의 물품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 3. 연구실내에서는 슬리퍼, 하이힐 등의 높은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
- 4. 실험자는 실험, 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실험을 한다.
- 5. 기기, 화공약품, 위험물 등은 사용 전, 후에 항상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 6. 연구실 일일점검표에 의거하여 매일 1회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7. 실험, 실습 중에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하게 자리이탈 시에는 안전조치 및 대리인 지정 후 퇴실 한다.
- 8.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격리, 위험물 및 고압가 스의 안전한 보관, 정리정돈, 시건장치 등을 확인 후 퇴실한다.

### 제4조 (기계기구 안전수칙)

학생은 기계기구 사용시 다음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주위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 2. 작업 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가루나 파편이 비산하는 작업은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3. 기계·기구의 운전을 종료할 때에는 작동 스위치와 전원스위치를 차단한다.

## 제5조 (기타)

학생은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교수 또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학생 실험실 출입 관리대장

No.	실험실명		출입일시		출입	학생	용무	책임 연구자 서명	명	
	2020	날짜	IN	OUT	성명	학번	0.	성명	학생	연구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장기계통 통합과정 책임교수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직-수평 통합, 수평-수평 통합의 새로운 교과과정의 도입취지에 맞게학생교육이 수행되기 위해 책임교수의 역할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운영위원회)

- ①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책임교수는 약간 명으로 구성된 과정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최소 1회 이상, 가급적 3회(과정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 운영한다.

## 제3조 (책임교수)

책임교수는 과정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며 효율적인 강의 구성 및 진행을 위하여 과정운영위원과의 회의를 통하여 학습 성과를 결정하고 강사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며, 강의록 및 시험문제를 점검하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 (강의 참관)

- ① 책임교수는 본인 또는 과정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참관인을 통하여 강의를 참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② 강의 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교수 또는 과정운영위원의 강의 참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과정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 제5조 (강사의 조정)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거로 과정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강사의 강 의를 조정할 수 있다.

- 1. 강의 준비과정과 강의록 제작 협조
- 2. 학습성과에 근거한 강의의 수행
- 3. 학습성과에 근거한 학생 평가의 적절성
- 4. 학생 및 강의 참관인의 강의 평가

### 제6조 (강사의 선정)

강사의 선정은 특정 교실이나 과에 국한하지 않고, 강의주제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졸업성과에 적합한 학생 수준의 강의가 가능한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 료인문학 분야의 강사진을 활용한다.

## 제7조 (강의 주제의 재선정)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거로 과정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강의 주제를 재배분할 수 있다.

- 1. 학습 성과의 중복 정도
- 2. 졸업성과에 합당한 강의내용의 여부
- 3. 학생 및 강의 참관인의 강의 평가

## 제8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과대학 RC행정팀 업무운영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 의과대학 RC행정팀(이 하 "RC")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정의)

RC(Responsibility Center)는 자율책임경영단위를 뜻한다.

### 제3조 (자율성과 책임성)

RC는 본교 자율책임경영제도(RCM)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업무를 운영한다.

## 제4조 (예산)

- ① RC의 자율책임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산을 운영한다.
- 1. 본교에 대한 의과대학 RC 수입기여도에 따른 일정비율의 배정 예산
- 2. 계약직원, 유급조교 인건비
- 3. 시간강의료, 초과강의료
- 4. 교내장학금
- 5. 전기요금, 수도요금
- 6. 감염 및 환경위험 관리 및 치료 비용
- 7. 기타 본부에서 지원하는 전략지원금
- ② 예산편성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5조 (업무)

- ① RC는 의과대학 내 행정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행정지원이 필요한 업무로는 교무, 학사, 예산, 기획, 연구, 시설, 총무, 입학, 대외, 산학, 국제화, 학생, 대학원, 교육병원지원, 평가인증 등을 둔다.

### 제6조 (업무체계)

- ① RC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별 담당자를 둔다.
- ② 업무담당자는 업무수행시 RC행정팀장에게 우선적으로 보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RC행정팀장은 의학과장 및 부학장과 논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④ RC에서 수행한 업무는 최종적으로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
- ⑤ 업무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 제7조 (직원교육)

RC 소속 직원은 정기적, 상시적으로 본교 인사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한다.

## 제8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조직, 직원인사와 관련된 규정 및 정책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과대학 연구조교 장학생 선발 시행 지침

###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6조'의 위임을 받아 의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연구조교 장학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제2조 (장학 대상)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 과정의 정규학기를 이수 중인 의과대학의 대학원 과정 재학생 중 선발한다.

## 제3조 (배정 및 선발)

- ① 배정된 장학 예산의 학과별 배분은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각 학과의 직전학기 등록금 총 수입금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10명 미만인 과는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재학생 수는 휴학생 및 제적생, 수료생, 연구등록생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 3. 입학성적 및 가계곤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타 사항은 학과별로 정할 수 있다.
- ② RC장은 대학원 장학위원회 결정을 통해 배정된 장학 예산의 10%이내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 단, 전략적 예산 배정금의 총 규모는 연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 (선발 제한)

교무처 조교 임용 규정에 결격이 없으며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1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장학금 수혜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1. 휴학 당시 학비감면 장학 수혜 사실이 있는 무등록 복학자
- 2. 유급 복학자
- 3. 초과 학기 등록자 및 연구 등록자
- 4. 징계 중인 자
- 5. 휴학자
- 6. 기타 장학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 (장학금의 취소)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기선발 처리된 장학 사항을 부분 또는 전면 취소하고 취소 처리된 장학금액을 환수한다.
- 1. 장학생 선정 후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2. 해당 학기의 조교 임용 기간 중 조교 의무 수행을 중단한 자
- 3.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 제6조 (소속 일치)

타 단과대학(원) 소속의 대학원생을 연구 조교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장학금)

- ① 학비감면 장학금으로써 학과 단위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다.
- ② 연구조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 (중복수혜 금지 및 예외)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3조'에 따라 교내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 중복수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수혜를 허용한다.

- 1. 학비감면 형태의 근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
- 2. 모든 교내 경비성 장학금 및 연구비 재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중복수혜를 허용

## 제9조 (기타)

본 시행지침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 및 세부사항은 '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장학위 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의과대학 연구조교 장학생 선발에 관한 학과별 시행 세칙

##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의과대학 연구조고 장학생 선발 시행지침 제3조 3항'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제2조 (학과별 시행세칙)

- ① 의학과는 최근 1년간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게재한자 중 신청자에 한해 심사하여 배정한다. 세부 심사평가, 선발인원,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기 건의 지원자나 합당한 해당자가 없을 시 입학성적 순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건학과 전속(full-time), 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아동심리치료학과 입학 성적순 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연구보조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입학 성적이 우수하거나 직전학기 성적 4.0 이상인자
- 2. 지도교수 산하에서 연구보조로서 근로봉사 제공자
- 3. 학기 및 방학기간 중 담당교수의 연구 활동 보조(실험실습 준비, 강의보조 등)자

## 부 칙

- (시행일) 1. 본 내규는 201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2. 본 내규는 2017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3. 본 내규는 2021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업무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

의학교육학교실은 의과대학의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교수 개발, 연구를 담당하는 교실로서 효율적인 의학교육발전을 위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 (구성)

- ① 의학교육학교실에는 의학교육학교실 소속 전임교원을 두며 업무를 지원하는 겸 무교수,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 ② 의학교육학교실의 주임교수는 의학교육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전임교원 중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의학교육학교실은 겸무교수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④ 겸무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기능)

의학교육학교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영역을 개발 및 지원, 자문한다.

- 1.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 2. 교수학습법 및 평가
- 3. 의학교육관련 연구
- 4. 교수개발 및 의학교육 전문가 양성
- 5. 교육정책 및 평가인증
- 6. 기타 교육관련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 제5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제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업무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

의료인문학교실은 의료인문학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을 개발하며 의과대학의 의료인 문학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 (구성)

- ① 본 교실에는 의료인문학교실 소속 전임교원을 두며 업무를 지원하는 겸무교수,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 ② 의료인문학교실의 주임교수는 의료인문학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전임교원 중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의료인문학교실은 겸무교수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의료인문학교실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④ 겸무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기능)

의료인문학교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영역을 개발, 지원 및 자문한다.

- 1. 의료인문학 분야 연구
- 2.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
- 3. 의료인문학 분야 실천 및 상담
- 4. 의료인문학 분야 전문가 양성
- 5. 기타 의료인문학 연구, 교육, 실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제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감염 및 환경위험 노출에 대한 지침

## 1. 목적 (Purpose)

감염 및 환경위험 노출 요인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재학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감염과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 예방과 노출시 대처를 주 내용으로 한다.

#### 3. 절차 (Procedure)

### 가. 학생의 감염 위험 노출 발생 시 보고, 관리 및 처리 절차

- 1) 혈액매개감염원에 대한 노출 시 예방 관리 절차
  - 가) 혈액매개감염 노출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 (1) 자상

(주사바늘에 찔림 needle stick injury, 날카로운 기구에 베임 sharp injury)

- (2) 혈액·체액이 눈, 코, 입, 상처의 점막에 튄 경우 등
- 나) 감염노출 후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1) 자상 부위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고 소독제로 소독한다.
  - (2) 혈액·체액이 눈, 코, 입, 상처의 점막에 튄 경우
    - (가) 멸균생리식염수를 이용한 eye wash set로 1L 이상 세척한다.
    - (나) 멸균생리식염수가 없다면,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한다.
    - (다) 응급조치 후 의대행정팀에 노출 경위 및 확인서를 제출한다.
    - (라) 감염내과 진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감염노출 후 예방적 처치 내용 및 절차는 [별첨 2]에 따른다.
- 2) 공기매개감염원 또는 비말로 전파되는 질환에 노출 시 예방 관리 절차
  - 가) 공기매개감염노출이란 [별첨 3]의 질환에 보호구 없이 노출된 것을 말한다.
  - 나) [별첨 3]에 해당하는 질환에 노출된 경우, 감염관리실은 노출된 학생의 감염력, 면역력 상태, 감염위험성을 확인하여 예방적 투약이나 검사를 받을 수있도록 조치한다.
- 3) 임상 실습 관련 감염노출 예방관리 조치에 따른 재정지원
  - 가) 임상실습 관련 감염노출 관리 조치(진료, 검사, 투약 등)에 따른 진료비 처리는 학생처에서 운영중인 진료비지원제도(상해사고 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의과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나) 필요 시 유관부서(감염관리실 등)에 협조를 요청한다.

### 나. 학생의 위험환경 노출 시 보고, 관리 및 처리 절차

- 1) 교육과정 중 위험환경 노출에 의해 사고 발생시 별첨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한다.
- 2)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등 의료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생 처에서 운영중인 진료비지원제도(상해사고 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 다. 학생 교육과 예방 접종

- 1) 의과대학은 학생의 감염과 환경위험에 대해 안전과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하여 임상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가) 손위생/기침예절
  - 나) 개인보호구
  - 다) 감염성질환 확인 방법
  - 라) 환경관리
  - 마) 감염노출 예방 및 관리 방법
  - 바) 화재 안전 및 금연
- 2) 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받고, 관련 사실을 각 실습병원 감염관리실에 제출한다.
  - 3) 다음의 질환의 경우, 의과대학 규정에 따라 실습 전 면역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예방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고 시행한다.
    - 가) A형 간염
    - 나) B형 간염
    - 다) 수두
  - 4) 다음의 질환의 경우, 실습 전 추가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한다.
    - 가) 홍역, 볼거리, 풍진
    - 나) 독감 유행 발생 전 매년

#### 라. 보고

학생의 안전사고, 건강문제 및 감염노출 발생에 관하여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 1) 발생 사례는 발생 시 의과대학 행정팀을 통해 각 병원의 교육과장에게 보고한다.
  - 2) 발생현황과 처리결과는 정리하여 의과대학 학장에게 보고한다.

### 4. 첨부

- 가. 별첨 1: 사고 경위 및 확인서
- 나. 별첚 2: 주사침 자상 등에 의한 혈액매개감염 노출 시 관리
- 다. 별첨 3: 노출 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공기매개 및 감염성 질환과 조치 사항

## 5. 관련 근거

- 가.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 1.2 (2010)
- 나.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병원감염관리, 한미의학, 2011

## 6. 부칙

- 가.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이 규정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사고 경위 및 확인서

# 사고경위 및 확인서

단과대학 시행일자	20		학 생 처 20 접수일자	
단과 <u>담 </u> 대학	당 파트강 팀 경	학(원)장	학생처 담당 팀 장	쳐 장
대 학(원)		학과 (부)	학 년	
학 번		성 명	쟁년월일	
주 소			<u>연</u>	
사고받쟁일	20	시 분	사고발생 장 소	
사 고 명			부상부위	
사고당사자 사고경위진술 (7줄이상볼펜 으로 기재)			학생 본인 :	인
수업 담당교수 (지도교수) 사고경위 확인				
1-1-50 H 45			수업담당교수(지도교수):	인

# 학생처장 귀하

- ★ 사고경위 및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보험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단과대학(원) 행정팀에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해사고만 해당됨)
- ※ 보험청구 서류 : 보험금청구서, 재학증명서 원본, 병원진단서 원본, 치료비영수증 원본, 의료비 비급여 상세내역 원본, 학생통장 사본, 학생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선 택), 교외사고일 경우 단과대학(원)에서 사전에 행사허가한 공문서 첨부
- ※ KB단체전용콜센터 : ☎1544-1616 → 2번(상담원연결) → 상담원에게 학생정보 제공 후 상담

발 신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치 학생지원팀 (☎ 02-2220-0085)

별첨 2. 주사침 자상 등에 의한 혈액매개감염 노출 시 관리

				환자 감염 여부				
감염		HBV		HCV	HIV			
원	-	(+)또는 결과 없음	( - )	(+)또는 결과 없음	( - )	(+)또는 결과 없음	( - )	
	직원면역상태							
	HBs Ab(+)	HBs Ab(-) 또는 결과없음	74.1.1	HCV Ab SGPT(ALT)	검사	HIV Ab	검사 필요 없음	
검사	검사 필요 없음	* HBV Ab profile * HBs Ag	검사 필요 없음		급시 필요 없음			
투약	항체 10mIU/mL 이상이면 투약 없음 항체 10mIU/mL 미만이 면 immunoglobulin IM vaccine IM 1차 시행		투약 없음	투약 없음	투약 없음	감염내과 진료 후 약 4주간 복용	투약 없음	
추후 관리	투약 6개월 후 HBs Ag, HBc Ab IgG 검사 실시		추후 검사 없음	6주, 6개월 양성 시 HCV PCR 실 시	추후 검사 없음	감염내과 진료 6주, 12주, 6개월	추후 검사 없음	

<sup>•</sup> 환자의 HBsAg, anti-HBC, anti-HIV 검사력이 없는 경우 환자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원유무에 따라 조치한다. • 상기 내용 외 필요한 사항은 감염내과 진료를 통해 조치한다

## 별첨 3. 노출 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공기매개 및 감염성 질환과 조치사항

종류	방법	적응증 주의사항	
디프테리아	Benzathine penicillin 1.2mU IM1회 또는 erythromycin(1gm/day)PO7일	디프테리아에 노출되거나 보균자로 확인된 학생	
수막알균 감염	Rifampin600mg PO12시간마다 2일 또는 cefriaxione250mg IM1회 또는 ciprofloxacin500mg PO1회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적절한 치료를 Rifampin과 하지 않은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 ciprofloxacin은 분비물에 직접 접촉한 학생 임산부에게 투여인	안함
백일해	노출 후 14일동안 Erythromycin 500mg qid 또는 Bactrim 1T bid PO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접촉한 사람	
수두 대상포진	VZIG 50Kg 이하는 125U/10kg IM 50kg 이상은 625U/10kg까지 IM 노출 후 96시간 이내 투여	수두에 감수성이 있는 사람과 감염된 면역저하자나 환자에게 장시간 가까이 노출된 학생 인신부에게 투여	고려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

제정일: 2019.11.15.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중심 교육

- 가. 학생의 교육 요구를 파악한다.
- 나. 평가를 형성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 다. 학업부진학생 및 위험군 학생을 지원한다.
- 라.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 2. 역량바탕 교육

- 가. 졸업역량에 기반하여 하위 성과를 설정한다.
- 나. 성과 달성에 적합한 교수법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 다. 성과 확인에 적합한 평가법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 라. 성과의 도달 여부를 총괄 평가하여 진급을 결정한다.

#### 3. 통합교육

- 가.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료인문학을 통합하여 교육한다.
- 나. 지식, 술기, 태도가 점진적으로 통합되도록 교육한다.

### 4. 전문직업성 함양

- 가. 전문직업성을 전체 교육과정동안 교육하고 평가한다.
- 나. 평생학습자로서 준비하도록 교육한다.
- 다. 잠재교육과정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교육한다.

#### 5. 졸업후교육 연계

- 가. 임상현장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평가한다.
- 나. 진로를 능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6. 지속적 교육평가

- 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나.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측면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 다. 교육과정의 평가와 관련된 측면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 라. 교육평가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 7. 체계적 교육지원

- 가. 의학교육진흥원을 두고 전담 인력 배치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 나. 의과대학 행정팀은 대학본부 및 의과대학 행정체계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 의과대학 학생평가지침(의예과)

제정일: 2022.04.07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원리와 원칙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가 대표교강사를 맡는 의예과 과목의 평가는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1. [사전공지] 수업계획서에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을 포함한 평가의 주요 사항을 공지한다.
- **2.** [평가기준] 다지선다형 및 단답형 주관식 외의 평가(보고서, 프로젝트, 발표 등)는 평가 기준을 함께 공지한다.
- 3 [시험운영] CBT 또는 OMR로 진행하는 시험에서, 시험 중 문항오류가 발견된 경우 정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문항은 성적 산출 및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성적공개**] 중간고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성적을 산출하여 학생이 개별적으로 점수와 상대적 위치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별도의 중간고사가 없는 경우에는 8주차까지 합산한 점수를 제공한다.
- **5. [이의제기]** 확인한 성적에 대하여 학생은 1주 이내에 적절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의할 수 있다. 적절한 형식과 절차는 과목에서 별도로 정한다.
- **6. [피드백]** 객관식 문항 중, 정답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시험 일로부터 2주 이내에 문항에 대한 풀이를 제공한다. 풀이는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수업 중에 설명할 수 있다.
- 7. [성적확정] 최종 성적은 학기 말에 의예과 성적사정회의를 시행한 후에 확정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의과대학 학생평가지침(1시기, 2시기)

제정일: 2020.01.2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원리와 원칙에 따라, 1시기와 2시기 통합과목에서의 평가는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필수사항]

- **1. [사전공지**] 과목이 시작하기 2주 전까지 수업계획서에 평가의 주요 사항에 관한 입력을 완료한다.
- 2. [평가방법] 지식, 술기, 태도의 2개 이상의 영역을 평가한다.
- 3. [형성평가] 2주 이상 진행되는 과목에서는 형성평가를 1회(1시간) 이상 운영한다. 형성평가란 퀴즈를 포함하여 해당 수업 시간 내에 시험 응시, 정·오답 확인, 점수확인, 문제 풀이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반영비율은 형성평가 1회당 0%이상 ~ 5%이하로 한다.
- 4. [평가횟수] 각 과목은 총 기간에 따라 총괄평가(고부담시험)가 일정 횟수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총괄평가는 전체 성적에서 단일 시험의 반영 비율이 30%이상인 것을 지칭한다.
  - A. 1~2주 과목: 1회(기말고사라고 지칭함)
  - B. 3~4주 과목: 2회(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지칭함)
  - C. 5주 이상 과목: 3회(최종 시험을 기말고사, 그 앞의 모든 시험을 중간고사라고 지칭함)
- **5. [성적공개**] 총괄평가의 경우 시험 종료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성적을 산출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 **6. [이의제기]** 확인한 성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생은 1주 이내에 적절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의할 수 있다. 적절한 형식과 절차는 과목에서 별도로 정한다.
- **7.** [피드백] 객관식 문항 중, 정답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시험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문항에 대한 풀이를 제공한다.

## [권고사항]

- 1. [사전공지] 각 평가요소(출석, 시험, 과제, 토론, 팀프로젝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공지한다. 내용이 짧을 경우 수업계획서에 포함하며, 내용이 긴 경우에는 별도의 유인물 또는 파일로 배포한다.
- 2. [평가방법] 시험문항은 수업 전에 출제하여, 수업 1주 전까지 수합한다.
- 3. [출제범위] 2회 이상의 고부담시험을 운영하는 과목에서는, 평가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반복될 수 있도록 시험문항 출제 범위를 누적한다.
- 4. [평가횟수] 단일 평가의 반영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5. [시험운영] CBT로 진행하는 시험에서, 시험 중 문항오류가 발견된 경우 정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문항은 성적 산출 및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6. [성적공개] 전체 점수 분포에 대한 기술통계(평균, 중간값, 점수분포 등)를 제공한다.
- **7. [재교육과 피드백]** 하위 10% 이하의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피드백을 통한 재교육을 제공한다.
- 8. [학업상담] 하위 10% 이하의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은 과목책임 또는 지도교수에 게 학업상담을 받도록 한다.

## 의과대학 학생평가지침(3시기 임상실습)

제정일: 2020.07.3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원리와 원칙에 따라, 3시기 임상실습과목에서의 평가는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1. [사전공지] 실습 시작 2주 전까지 임상실습지침서에 평가의 주요 사항을 확정하여 공지한다. 채점기준표(scoring rubric)가 있는 경우 가급적 사전에 확정하여 함께 공지한다.
- 2. [평가영역 및 방법] 임상실습에서는 지식, 술기, 태도의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 각 영역에서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단, 이 구분은 절대적 이거나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이 외에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A. 지식(Knowledge) 중심의 평가: 졸업성과 중 "7. 의학적인 지식"과 "8. 과학적인 사고"에 대한 평가를 주 목적으로 한다. 필기시험(선다형 또는 서술형) 또는 문헌자료(Textbook 또는 저널 등)의 보고에 기반한 평가이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i. 필기시험: 실습 전 시험(진단평가, Pre-test 등), 실습 후 시험(Post-test, 학년 말 시험 등) 등
    - ii. 문헌자료 보고 평가: 저널발표(또는 저널리뷰), 북리딩(또는 북리뷰) 등
  - B. 술기(Skill) 중심의 평가: 졸업성과 중 "1. 진료능력", "2. 의사소통", "6. 자기주도 학습", "8. 과학적인 사고"에 대한 평가를 주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상황(마네킹, 시뮬레이션, 표준화 환자, 실제 환자 등)에서의 병력 청취 능력과 임상 수기 수행 능력, 이를 바탕으로 한 의무기록 작성 및 보고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i. 진료수행 평가: Role play, CPX 등
    - ii. 수기수행 평가: OSCE, Skill lab 평가 등
    - iii. 의무기록작성 평가: 입원 문진표, 예진 기록지, 당직일지, 판독문, 환자교육 보고서 등
    - iv. 의무기록발표 평가: 증례 발표 등
    - v. 자기평가: logbook, 임상실습점검표, 학습성과자기평가표 포함 등
  - C. 태도(Attitude) 중심의 평가: 졸업성과 중 "3. 인문학적 소양", "4. 전문직업성", "5.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주 목적으로 한다. 임상실습 수행 중 확인된 전문직업적 태도와 행동(존중, 공감, 책임감, 신뢰성, 자기조절, 윤리·도덕성 등)에 관한

평가이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i . 출석
- ii. 실습 태도(환자의사관계 평가 등)
- iii. 성찰일지
- 3. [평가 결과의 활용] 교육성과의 달성과 학습 증진을 위하여 다음을 따른다.
  - A. 학생의 책임: 학생은 자신의 임상실습 포트폴리오(이하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포트폴리오란 '임상실습 과정에서 생성된 학습 및 수행 이력의 기록물의 모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은 임상실습에서 구두로 제공받은 피드백을 스스로 기록하여 학습 개선에 활용할 책임을 갖는다.
  - B. 형성평가와 피드백: 각 과 또는 분과의 교육담당교수는 임상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학생의 역량 수준과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이 때, 의도한 교육성과에 비하여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형성적 목적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 C. 총괄평가: 총괄평가를 위한 임상실습 성적 산출에는 2-A, 2-B, 2-C의 평가 점수를 고르게 활용한다. 단, 포트폴리오 평가시 자기평가(2-B-v)는 가급적 반영하지 않는다. 필기시험(2-A-i)의 반영비율은 가급적 최소화하며, 성적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D. 이의제기: 확인한 성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E. 학습자 인계: 교육담당교수는 본인과 동료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나 심각한 전문직업적 문제행동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한다.
    - i. 해당 실습의 교육책임자가 개별 지도 및 상담한다.
    - ii. 주요 사항을 다음 실습 책임자에게 알린다.
- **4.** [평가운영] 평가의 지속적 개선과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다음을 고려한다.

#### A. 평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

- i. 평가자 수를 늘린다. 예를 들어, 학생 증례발표 시 평가자의 숫자를 늘린다.
- ii. 다양한 내용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병력청취능력을 외래 예진과 입원환자에 대해서 평가한다.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수기에 대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iii. 평가 횟수를 늘린다. 예를 들어, 성찰보고서를 2회 이상 작성하게 한다.

#### B. 평가의 타당도 확보를 위한 방안

i. 평가의 목적에 적합한 채점기준표를 사용한다.

- ii. 단순한 사례와 복잡한 사례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iii. 모의상황(마네킹, 시뮬레이션 등)과 실제상황(표준화 환자, 실제 환자)에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iv. 상황에 따라 학생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조절하며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본관1층 Wall of fame 기부자 명패의 향후 관리 원칙

- 제1조 의과대학 전체(장학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건축기금)를 위한 기부금만 명 패를 게재하며, 개인이나 교실 및 의료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게재하지 않 는다.
- 제2조 게재 기준액(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이 100% 입금된 경우에 명패를 게재한다.
- 제3조 동기회/과동문회 등 단체의 명패에는 부조없이 글씨만 넣는다. 예) "한양의 대00회 졸업동기회"
- 제4조 게재일시는 연말(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액을 확인후 1월에 게재한다.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본관1층 Wall of fame 단체 기부자 명패의 향후 관리 시행 세칙

- 제1조 여러 명이 기부한 단체의 기부자 혜택은 명패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제2조 단체명으로 명패기재를 원하는 단체는 발전기금위원회에 명패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단체의 기부자 명패의 게재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 된 경우에 한한다.
- 제3조 명패게재 신청서에는 1) 게재하고자 하는 단체명, 2) 기부자 명단과 기부액 (기부액은 약정액이 아닌 입금액으로 함), 3) 신청일, 4) 단체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록한다.
- 제4조 개인 기부금과 개인이 속한 단체 기부금은 다중으로 인정하여 관리한다.
- 제5조 명패 게재 신청 후 4주이내에 발전기금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재 여부를 결 정하고, 학기말에 게재한다.
- 제6조 게재식에는 기부 단체를 초청하여 게재한다.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본관1층 Wall of fame 단체기부자 명패 게재 신청서

- 1. 게재하고자 하는 단체명:
- 2. 기부자 명단과 기부액(기부액은 약정액이 아닌 입금액으로함):

별도 엑셀화일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 3. 신청일:
- 4. 단체 담당자 및 연락처:

## 의과대학 규정검토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일: 2023년05월16일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규정과 내규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담당하는 의과대학 규정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주요 기능을 정함에 그목적이 있다.

#### 제2조 (위원회 구성)

- ①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의학교육진흥원장, 연구부학장, 학생부학장, 의학과장, 의예과장으로 한다.
- ③ 규정과 내규의 제ㆍ개정 발의자(혹은 부서)는 해당 안건의 발의위원으로서 참여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임기와 같다.

#### 제3조 (위원회 기능)

- ① 위원회는 의과대학 규정과 내규의 제·개정 사항이 보직자회의에 상정되기 전, 그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타당성, 객관성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 유고 시, 학장이 위원 중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 제4조 (심의와 의결)

- ① 위원장은 의과대학 규정과 내규의 제·개정 사항의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당연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보직자회의 상정)

위원장은 이 규정 제4조에 따라 심의 의결된 의과대학 규정과 내규 제·개정 사항을 의과대학 보직자회의에 상정한다.

## 제6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과대학 보직자회의의 의결을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서 식

## 소명신청서

- 1. 소속 :
- 2. 학번 :
- 3. 성명 :
- 4. 신청사유 :

상기 본인은 의과대학 진급사정 및 소명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진급 및 졸업사정 결과에 대해 소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인)

접수자 (인)

2022. .

의과대학 진급사정 및 소명위원회 위원장 귀하